

전북 농어업 ·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Diagno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Value Support Project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y in Jeonbuk

황영모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전북 농어업 ·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Diagno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Value Support Project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y in Jeonbuk

황영모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황영모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연구	김시백	연구위원	제4장 3절, 4절
	배균기	연구위원	제2장 1절, 3장 5절
	정호중	전문연구원	제3장 1절~4절, 4장 2절
	박로운	전문연구원	제1장 4절, 부록

연구관리 코드 : 21JU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논의·기획, 추진과정에서 참여형 지역농정 혁신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의 공익직불제를 보충·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농어민 공익수당의 의의·특징을 정립하고 추진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전라북도 논의기구(TF) 자문을 진행함
- 지역·연령·성별 비례 할당된 농업인 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의 실행진단, 정책의 기대효과와 영향요인 분석, 산업연관 방법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통계분석을 수행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사업의 ‘실행진단’

- (이해·만족) 사업내용의 이해정도(66.3%)와 목적·조건 등 정책 만족도(65.5%)가 높음
- (준수사항) 공익수당 이행조건(필수+선택)을 높은 수준(76.2%)에서 실천·이행하고 있음
- (수당사용) 농자재(42.4%)·식재료(21.8%)·생활용품(20.9%) 등 영농과 농가경제에 사용
- (개선과제) 지급대상·금액 확대, 부정수급 점검 강화, 재정여건 고려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사용자 확대, 지급제외 기준 완화, 이행조건 완화 등 사업 개선의견이 있음

■ ‘기대효과’ 분석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책목적과 연계한 농업경영·농가경제·마을활력·공익기능·자존의식·실천의지 등의 기대효과에 대부분 도움이 된다(70.4%)고 체감하고 있음
- 기대효과별로 비료·농약 감축 의향(75.8%),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74.5%), 농촌 마을 활력 기여(73.3%), 농업인 자존감 향상(72.6%), 공익적 기능 유지 기여(72.3%), 생산활동 지속 도움(69.3%), 영농·경영활동 도움(69.2%), 농가경제·살림살이 도움(68.3%), 영농규모 확대 계획(58.1%) 등의 순임

■ ‘파급효과’ 분석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산업생산 841.1억원, 부가가치 339.9억원, 고용 989명 증가로 나타났음
- 지역화폐 지급효과 내재화율은 생산 68.2%(현금 44.3%), 부가가치 68.7%(현금 47.7%), 고용 80.3%(현금 56.4%)로 현금 지급보다 지역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규모의 예산을 SOC(건설 등), 공공행정 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해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개선방향과 과제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에 대해 지켜야 할 서로간의 의무와 역할을 정해 놓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적이며 사회적인 ‘계약’이 정책의 기본전제로 자리매김해야 함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방향과 개선과제 제안〉

구분		주요과제	비고
기본전제	⑥ 농업인-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계약을 통한 의무와 역할을 전제	
개선방향	① ‘정책목적’을 강조하고 확대	다양한 기대효과·정책효과 반영	
	② ‘정책효과’의 평가·자료작성	정책효과 평가방안 마련, 자료작성	
	③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	농업인 교육, 도민 홍보 확대	
개선과제	① ‘신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절차 준수, 최소 서류 간소화	
	② ‘이행조건’의 강화·실천 확대	의무이행 강화, 자율실천 확대	
	③ ‘지도·점검 강화’ 투명성 확보	부정수급 방지, 의무이행 점검	
	④ ‘지원수당 사용처’ 확대 검토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검토(시군)	
	⑤ ‘대상과 지원액’의 확대·상향	재정여건 감안 쟁점 협의 논의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구성	5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6
4.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현황

1. 추진과정	19
2. 사업개요	23
3. 사업지침	27
4. 사업의의	31

제3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실행진단

1. 실행진단 조사개요	40
2. 지원정책 인지수준	45
3. 준수사항 이행수준	52
4. 지원금의 사용현황	58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61

제4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효과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진단	72
	2.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84
	3. 사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93
	4. 종합논의 및 시사점	103
제5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안	
	1. 연구내용 요약	113
	2. 개선방향 제안	116
참고문헌		123
영문요약 (Summary)		126
부록		131
	부록 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133
	부록 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설문조사표	139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6
[표 1-2] 공익직불제·농민수당·기본소득 특징 비교	8
[표 1-3]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주요내용 비교	11
[표 1-4]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13
[표 1-5] 선행연구 검토 요약	16
[표 2-1]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	25
[표 2-2]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제출서류	28
[표 2-3]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비교	29
[표 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	30
[표 2-5] 사회보장제도 협의 주요내용	35
[표 3-1] 설문조사 주요영역과 세부내용	41
[표 3-2] 설문 응답자 현황	44
[표 3-3] 인지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45
[표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47
[표 3-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	48
[표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	49
[표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49
[표 3-8]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50
[표 3-9]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	51
[표 3-10]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수준	53
[표 3-11]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비율	53
[표 3-12]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실천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	54
[표 3-13]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준수의 어려움	55
[표 3-14]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어려움 비율	55
[표 3-15]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어려움 정도의 집단별 차이 비교	56
[표 3-1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순위별 사용처	58
[표 3-1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의 사용처별 비율	59
[표 3-18] 경영형태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0
[표 3-19] 연령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0
[표 3-20] 농가소득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1
[표 3-21] '이행조건'에 대한 의견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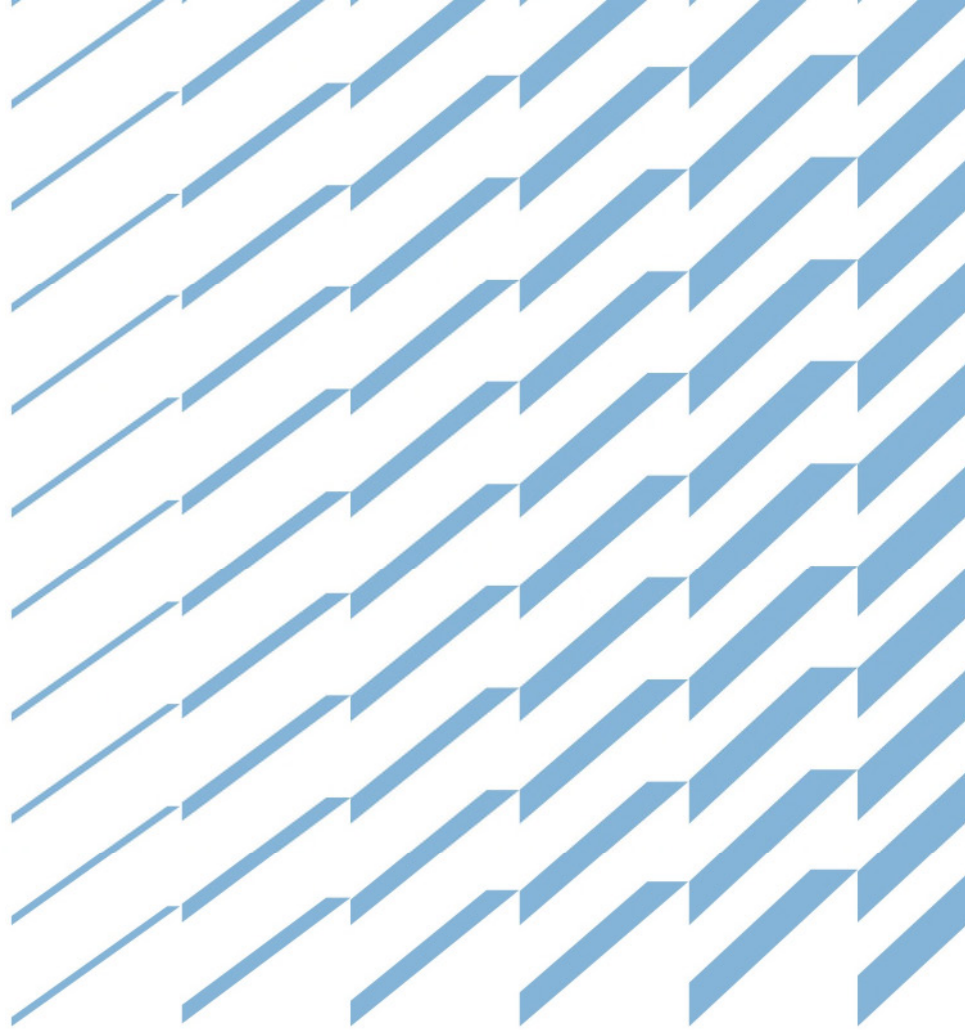
[표 3-22]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63
[표 3-23]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64
[표 3-24]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65
[표 3-25]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67
[표 3-26]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평가	68
[표 4-1]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주요내용	72
[표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73
[표 4-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74
[표 4-4]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76
[표 4-5]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76
[표 4-6] '농업생산 활동 계속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77
[표 4-7]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78
[표 4-8]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79
[표 4-9]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80
[표 4-10] '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 의향'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81
[표 4-11] '영농규모 확대 계획'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82
[표 4-12]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계획'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83
[표 4-13]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 관련 변수별 스피어만 상관계수 분석결과	86
[표 4-1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87
[표 4-15]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실천의지'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87
[표 4-16]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88
[표 4-17]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91
[표 4-18] 농어민 공익수당 지출 항목별 해당되는 산업 분류	97
[표 4-19] 투입산출모형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대분류)	98
[표 4-20]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 및 지출 규모 (2015년 산업연관표)	99
[표 4-21] 사업 유형별 투입산출모형 계산 과정	100
[표 4-2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1
[표 4-23]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102
[표 4-24]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103
[표 5-1]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방향과 개선과제 제안 (요약)	11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공익기증 증진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간 상보적 역할	12
[그림 1-2] 도시민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추가부담 동의 의견	15
[그림 2-1] 전북 공익형직불제 논의 TF 회의	20
[그림 2-2]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도민 설명회	21
[그림 2-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과정	22
[그림 2-4]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과 지원농가 (2021년)	24
[그림 2-5]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14개 시·군 업무 협약서	26
[그림 2-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의의	31
[그림 3-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43
[그림 3-2] 응답자의 연령과 소득수준별 분포 (%)	43
[그림 3-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인지수준	45
[그림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46
[그림 3-5]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	46
[그림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 (종합)	48
[그림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의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종합)	50
[그림 3-8]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내용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교	52
[그림 3-9]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이행수준 (종합)	53
[그림 3-10]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어려움 정도 (종합)	55
[그림 3-11]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이행수준과 어려움 정도 비교	57
[그림 3-12]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별 비중	59
[그림 3-13] '이행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62
[그림 3-14]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64
[그림 3-15]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65
[그림 3-16]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66
[그림 3-17]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67
[그림 3-18]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의견 종합	68
[그림 4-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종합)	74
[그림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75
[그림 4-3] 투입 산출 모형 개요	94

[그림 4-4] 산업연관표 개요	95
[그림 5-1]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효과 간의 관계 모식도	118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4.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¹⁾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삼각농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제를 제안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 도·시·군의 업무협약(재원분담)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공익직불제)과 달리, 지자체가 정부 농정을 보충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는데, 정책목적, 논의와 기획,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농정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으로 확산되어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등에서도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조건부로 시행되었는데, 쟁점의 배경은 ‘정부 공익직불제와 중복성, 광역-기초간 협의, 지속가능한 재정부담’ 등이 주요 내용이었음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중복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²⁾,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

1) 전라북도 지역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삼각농정위원회’의 분과회의, 운영소위, 운영협의회를 통해 해당 정책사업 기획과 추진의 제안과 논의가 있었음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조건 이행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기획되고, 지자체(도+시·군) 협력을 통해 시행된 의미 있는 지역농정 혁신 사례인 만큼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³⁾하고, 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첫째, 2018년 제안되어 2020년부터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등 정책현황을 정리하여 지역농정의 차원에서 정책기획과 추진·실행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정책화하였는지를 자료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목표·사업내용·준수사항 등이 개별 농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정책지원으로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지 살펴 실제 농업·농촌 현장의 정책 수용 정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공 재원을 동원(투자)하여 개별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넷째, ‘농어민 공익수당’의 현장 만족도와 요구도를 고려하여 정책사업의 개선을 전라북도 농정 거버넌스 기구⁴⁾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사업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근거자료가 요청되고 있음

-
- 2) 사회보장위원회는 강원도의 유사사업 협의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와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3) 농민단체는 사업기획 당시(2019년) ‘농가 단위 년 60만원 지급’을 ‘농업경영체(농민) 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주민청원 조례개정(안)을 2020년과 2021년, 2차례 전북도의회에 제출하였음. 도의회는 심의를 유보하는 끝에 주민청원 조례개정안을 폐기하였고, 농민단체의 반발과 농성 등이 이어져 왔음
 - 4) 삼라농정위원회는 농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한 ‘농어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구성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의 세부내용 마련, 추진상황 점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2. 연구내용과 구성

-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은 크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①정책현황, ②실행진단, ③정책효과, ④개선방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현황’을 정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지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등을 정리하며, 지역농정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농정시책의 의제화, 논의와 합의, 실행 등의 과정을 개괄하고자 함
- 둘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구조화하여,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실행수준’을 진단하고자 함
 - 지원사업의 정책요소는 ‘인지정도, 만족수준, 이행수준, 기대효과’ 등으로 구조화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행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인지수준, 준수사항 이행수준, 농어민 공익수당의 사용현황, 지원사업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시책을 시행하는 초기인 시점을 감안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논의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사업 도입단계에서 설정한 기대효과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를 조사·파악하고, 지역경제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효과 평가, 재정지원에 따른 지역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임
- 넷째, 정책현황·실행진단·정책효과 등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의의, 진단, 효과 등을 종합하고, 개선(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진단과 정책효과를 요약·정리하고, 개선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 방향·과제 등을 제안하여 향후 논의의 근거로 삼고자 함

[표 1-1]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구 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1장. 연구개요 (연구배경)	• 농어민 공익수당 진단 주요배경 •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내용 정리	문헌검토
2장. 정책현황 (정책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추진 과정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의의	자료검토
3장. 실행진단 (모니터링)	• 정책 대상자의 사업내용 인지수준 • 지원사업 준수사항 이행수준 진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사용현황 파악 • 지원사업의 개선에 대한 의견파악	설문조사 통계분석 자문회의
4장. 정책효과 (성과분석)	•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평가 •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설문조사 통계분석
5장. 요약·종합 (개선방향)	• 실행진단과 정책효과 분석의 종합논의 • 정책 의의, 성과, 과제 등 추진방안	자료정리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 지역농정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진단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자료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음
- 자료조사
 - 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국책 연구기관 등의 정책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연구 내용을 논의하고, 연구방법을 정하는 데 활용함
- 설문조사
 - 사업을 실행진단(모니터링)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인지, 이행수준, 정책만족, 기대효과, 개선과제 등에 관한 정보(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는 연구진이 작성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논의 TF’ 회의에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농업인 54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 활용 조사원 면접조사를 진행함

- 전문가 자문

- 농업인단체,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논의기구(농어민 공익수당 TF)를 통해 연구내용, 설문조사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 등을 진행함

- 통계분석

-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분석하고, 기대효과의 영향요인 탐색 등 통계분석을 진행함
-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함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농정 시책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실행의 근거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연구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실행진단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농정 거버넌스 기구(삼락농정위원회)의 논의자료와 삼락농정의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사업도입의 전제조건(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등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가 해당 농정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정책사업의 의의와 효과를 정리하여, 지자체 농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4. 선행연구 검토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핵심어는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 농민 공익수당, 농업경영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정리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현황에서 다루는 정책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는 근거로 삼고자 함

- 첫째,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의 주요내용에 대해 유찬희 외(2020)는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등으로 대별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있음
-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⁵⁾이 시장에서 평가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가 재정적 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의 시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있음
-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는 목적, 법적근거, 지급대상, 준수사항 등에서 공익직불제와 유사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있음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이질적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주요원칙⁶⁾ 중 농민수당은 일부 원칙(정기성)만 충족하고, 농민기본소득 자체도 원칙 중 일부(보편성)가 적용되지 못해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 논의에서 제외하고 기본소득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는 농가의 영농 지속을 밑바탕으로 공익 기능의 증진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표 1-2] 공익직불제·농민수당·기본소득 특징 비교

구분	공익(기본)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주요목적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지급 (미래 지향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 지급 (현재까지 기여 인정)	기본권 및 자유보장,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 지급
지급요건	준수사항 설정	구체적으로 설정	보편성(무차별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
지급기준	농가·농지면적	농가(경기, 부여 제외)	개인
지급방식	직접 지원 (현금)	직접 지원 (현금/지역화폐)	직접 지원 (현금)
시행주체	중앙 정부	지자체	지자체

주 :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 범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 시행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료 : 유찬희(2021)

-
-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우호적인데, 공익적 기능이 높다는 인식은 64.1%(11년) → 53.8%(13년)→70.5%(15년)→70.0%(17년)→64.2%(19년)로 조사됨. 자세한 내용은 이정민 외(2019)를 참조
- 6)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임

강조하고 있음

-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실제로 증진시킬 수 있는 세부 실천 활동을 세밀히 설계해야 하며, 재원의 한정·제약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집중 및 지원과정에서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의 전제가 되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후불 보상’보다는 ‘선불 투자’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준수 사항은 현재까지의 공익 기능 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과 향후 만들어질 공익 증진 활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시장에서 평가되고 보상되지 않는 공익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일정한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선불 투자의 논리가 후불 보상보다 더 정합성을 가진다고 파악함
- 둘째, 이민우 외(2019)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인 소득보장 방안으로 ‘농민수당’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실행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모델⁷⁾로 논의되는 방안이 그대로 적용·시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농민수당’을 새로운 공익적 가치 보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농민수당의 목적을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의 증진’으로 규정함

7)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 등이 그것임

- 농민수당의 정책 원칙을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수정·제안하였는데, 공익 기능 유지·증진이라는 ‘목적성’을 추가하고, 보편성은 농업인으로 수정하며,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부가되는 상호준수 의무를 추가한 것이 그것임⁸⁾
- 농민수당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하여 ‘농지훼손 금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의 형상 유지’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로 지급하는 방식을 강조함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대해 지불하는 공익직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단가가 결정되어 농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금액으로 지불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셋째, 농민수당의 정책 도입과 실행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쟁점에 대하여 이수미(2020)는 공익직불제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대별하여 주장하고 있음
- 공익직불제는 쌀변동직불제 폐지, 논·밭 통합으로 농가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소득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수준의 미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전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 이에 비해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부터 농업 현장의 주요 농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것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지키고 증진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농민권리와 관계된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농민수당은 명칭, 목적,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익직불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⁹⁾

8)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지불, 정기지불, 현금지불’이라는 5대 원칙을 ‘교차준수(무조건성), 농민(보편성), 농민지불, 정기지불, 지역화폐(현금지불), 공익기능 유지·증진’의 6대 원칙으로 수정 제안함

- 이 밖의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농민수당 실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으로는 ‘농업인 기준, 농촌지역 기준, 소득수준 기준, 여성농민¹⁰⁾, 겸업농민, 은퇴농민, 외국인 농업노동자, 공익활동 증빙, 지급금액, 재원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¹¹⁾

[표 1-3]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주요내용 비교

구분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추진주체	국가(농림축산식품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법적근거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개념	농업활동으로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등 소득안정	농업·농촌 유지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구성	기본형 공익직불(소농과 면적으로 구분), 선택형 공익직불	단일
대상	일정 규모 농지 등	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
기준	농지(면적)	지역 농민
의무	17가지	지역마다 차이 (유/무)
지원	소농직불 120만원, 면적직불 차등단가	±60만원
방법	계좌입금	지역화폐(해당 지역만 사용)

자료 : 이수미(2020)

- 넷째, 이 연구에서 다루는 농가소득 직접지원 프로그램 중 농민수당의 제도적 성격의 쟁점에 대하여 유찬희 외(2020)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영농을 전제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므로 기본적으로 산업적 성격을 가지며, 지역농업의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익 증진 활동 대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단함
-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보장 정책¹²⁾과의 유사성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은 특정

9) 농민수당을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명칭을 보면, 농민수당(충남도, 부여군, 여주시, 청송군, 합천군, 해남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봉화군, 의령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울산시, 전북도, 고창군) 등으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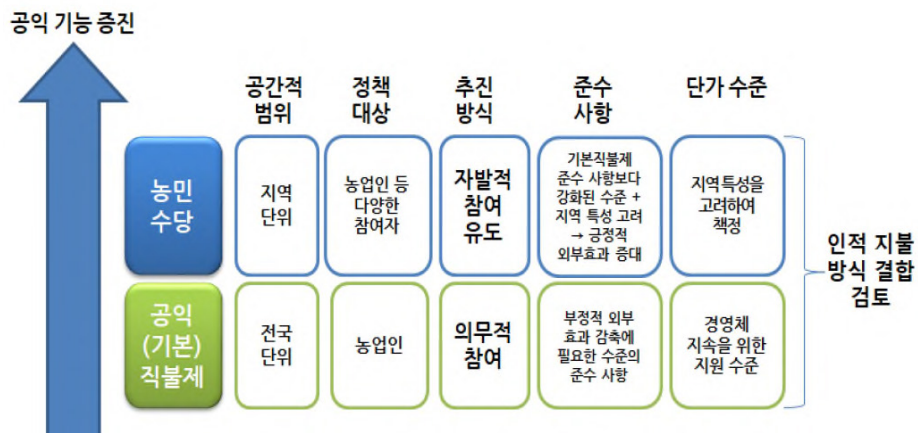
10) 이에 대해서는 정영이(2018)를 참조

11) 이러한 농민수당 시행에 있어 쟁점은 정책시행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에 대한 개정의 요구와 함께 별도의 주민참여 조례 청원 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수미(2019)를 참조

12) 농민수당을 복지 정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농민수당의 신설 변경을 협의하였는데,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의 농민수당 10건(2020.7)에 대해 모두 조건부 협의 완료로 결정하여 농민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조건부 협의는 일정 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한 뒤 사업 추진 지속

계층을 선별해 소득을 지원하는 자체가 목적이라고 정리함

- 반면,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는 소득 직접지원을 수단으로 공익 기능 증진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를 실행하는 층위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 운영 또는 중복 지원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역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서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중앙 정부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춤
-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 외부효과와 관련된 실천활동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 : 유찬희 외(2020)

[그림 1-1] 공익기능 증진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간 상보적 역할

- 특히,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므로 현행 공익 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상보적 관계로 하여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유찬희 외, 2020)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다섯째, 박준기 외(2019)는 지자체가 농가소득 지원과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지자체가 지역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농가소득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함
- 지역 내 농가들이 직면한 소득문제는 고령화, 경영비 부담, 영농실패, 신규진입 등으로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편을 제안함
-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정 품목 중심의 경영비 지원사업¹³⁾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개편이 필요한데, 비료·농약 등 환경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농업 자원·환경관리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제약과 타 부문·계층의 갈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상권 활성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지역농정의 영역에서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체 간 협의와 조정을

[표 1-4]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구분	접근방식	지자체 역할
고령화	복지적 지원	•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지원 • 개인별 소득지원 (국가)
경영비 부담	경영비 절감 지원	•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 비료·농약 지원 최소화
공익증진역할	직불금 방식으로 지원	• 지자체별 공익증진 역할 발굴 및 지원 (국가와 협의)
자금부족	종합자금과 경영자금 지원	• 지자체의 보증 역할(기술력 담보)
영농실패	경영회생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 영농기술교육 및 지역농업 정보 제공
신규농가	농지구입자금과 정착자금 지원	• 농지구입 및 주거(빈집) 관련 정보 제공
조건불리지역 생활	농촌지역 유지 지원	• 지자체 차원 생활여건 개선지원(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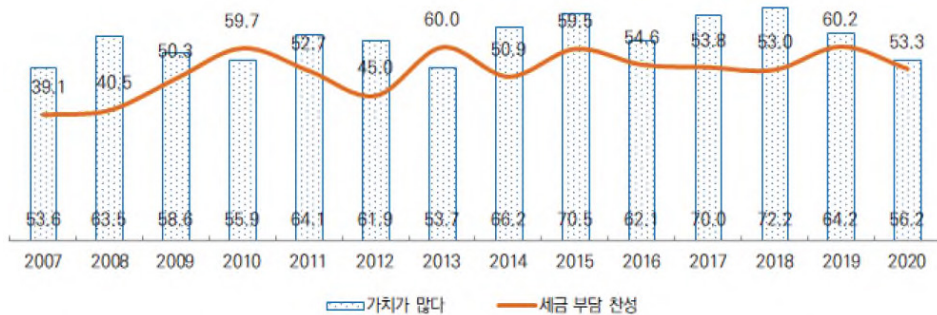
자료 : 박준기 외(2019)에서 수정

13)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보조의 효과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수급 균형점 도달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지자체가 단기성과 효과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박준기 외(2019)를 참조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 기구를 제안하였음

- 여섯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이혜민(2021), 양준석 외(2020), 유영성 외(2020) 등은 지역경제 기여를 사례로 실증하고 있어, 농민 공익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의 효과를 다루고 있음
- 이혜민(2021)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을 사례로 소비구조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제 수단의 대체는 물론 역내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함
- 양준석 외(2020)는 대전시 지역화폐(온통대전)를 사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소비 증대분은 지역화폐 사용액의 29% 수준으로 추정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음을 분석함
- 유영성 외(2020)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전-사후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치환하고 지역을 재발견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줌
-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및 소득증대, 산업연관 효과 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구의 주제인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방식(지역화폐)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정한 분석 결과 도출이 필요하겠음
- 일곱째, '농가소득 직접지원'의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병준 외(2020)를 통해 '국민의 농업·농촌 의식'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음
- 우리 국민(도시민)의 56.2%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치가 없다는 비율은 9.2%에 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여건이 매우 우호적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가 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3%에 달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등을 통한 지원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공익직불제)에 대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것에 대해 도시민의 45.4%가 적절하다는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로 나타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업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동의가 컸음
-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농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2.3%로 높아졌고, 이것이 농업경영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농업생산비 증가 20.2%)로 응답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농업경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국민(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잘 인식하고 있고, 유지·보전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추가 재정지원에 동의하고 있어, 영농 어려움을 고려할 때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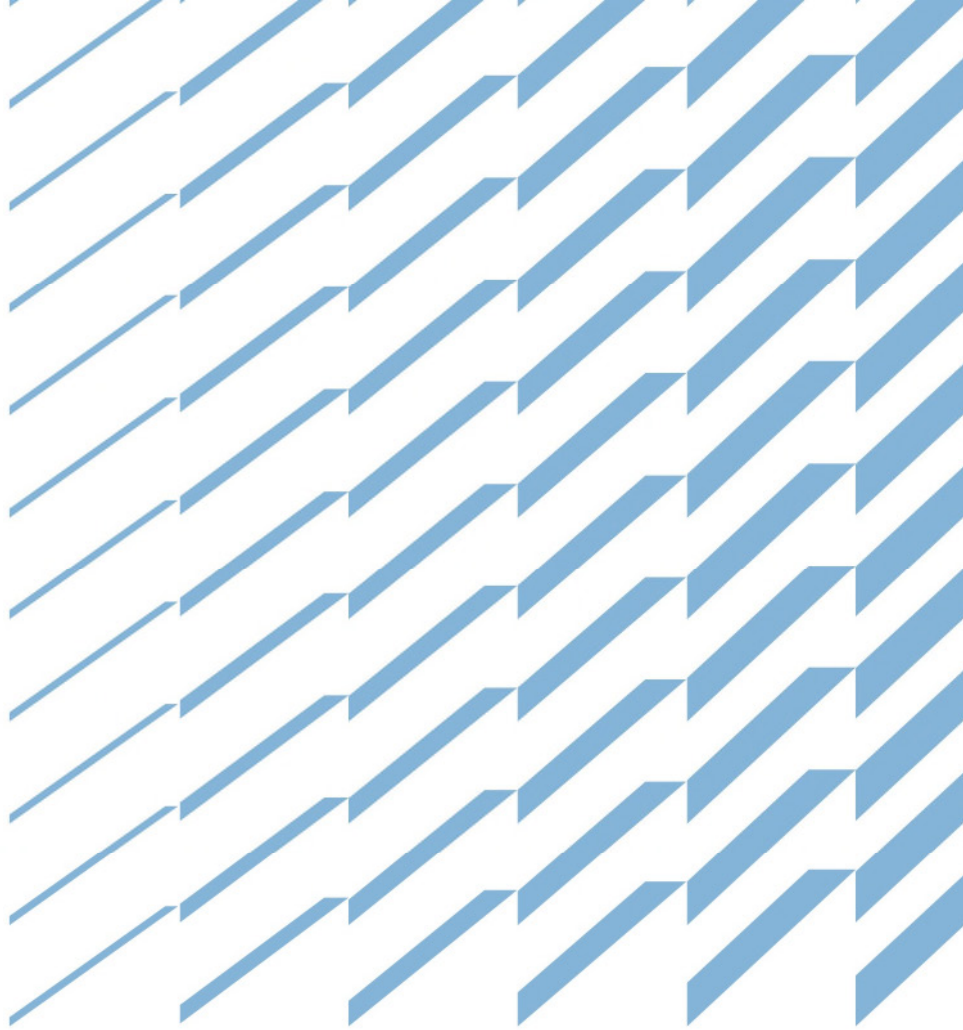


자료 : 우병준 외(2020)

[그림 1-2] 도시민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추가부담 동의 의견

[표 1-5] 선행연구 검토 요약

구분	주요내용	연구자료
① 농가소득의 직접지원 제도 프로그램 등 비교 연구	•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등의 특징을 대별 • 농가소득 직접지원은 영농지속의 밑바탕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유지 수단으로 강조 • 시장에서 평가보상 못되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선불투자 논리가 정합성이 크다 파악	유찬희 외(2020)
② 농민수당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	• 농민수당 원칙은 공익기능 유지(목적성), 농업인 전체(보편성), 유지를 위한 의무(상호준수)로 규정 • 농민수당은 동일 금액 지불이라는 점에서 정부 공익직불과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	이민우 외(2019)
③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차이에 대한 검토 연구	•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부터 현장에서 요구해온 농민 권리와 관련된 성격을 가짐 • 농민수당의 목적·대상·방안이 공익직불과 유사하지만, 실행에 있어 정책효과가 높음에 주목	이수미(2020)
④ 농가소득 직접지원과 농민수당 쟁점 연구	• 농민수당·공익직불은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두어 소득지원 목적의 복지정책과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 •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은 외부효과와 실천활동에 차이가 있어 상보적 관계로 개편해가야 함을 제안	유찬희 외(2020)
⑤ 지자체 농가소득 지원정책 필요성 제안 연구	• 지자체에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편 필요를 주장 • 지역화폐 등을 통한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으며, 정책추진을 위한 지자체 내 논의기구를 제안	박준기 외(2019)
⑥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사례의 실증연구 • 역내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 • 순소비 증대분이 높아 소비진작 효과 기여를 증명	이혜민(2021) 양준석 외(2020) 유영성 외(2020)
⑦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사회 여건에 대한 연구	• 도시민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우호적 여건 확인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민의 추가 납세의향 확인 • 농업인의 영농 어려움을 통해 직접지원 근거 확인	우병준 외(2020)



제2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현황

1. 추진과정
2. 사업개요
3. 사업지침
4. 사업의의



제 2 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현황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 지역농정으로 논의와 기획, 시행과정에서 정부 농정을 보충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는데, 지자체 농정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사업의의’ 등을 정리하여 지역농정의 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함¹⁴⁾

1. 추진과정

■ 제안과 추진

- 2018년 3월, 전라북도 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논의를 시작하였음
-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 공익수당’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용을 만들 논의기구로 ‘삼락농정 농가 직불제 논의TF’를 구성하고 2018년 3월~7월까지 운영하였음
- 농업인단체,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TF는 총 3회의 회의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함
- 2018년 5월, 제7회 지방선거 중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농정공약으로 발표되었고, 민선 7기 전라북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의 준비를 시작하였음

14) 정책의 제안, 기획, 논의 등의 과정에서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등의 표현으로 명칭하였으므로 당시의 표현사용을 그대로 적용함

■ 본격적 논의

- 2018년 7월, 기존 운영하던 ‘농가 직불제 TF’를 삼락농정위원회의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을 본격화하였음
-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는 2018년 7월 ~ 2019년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이 단위에서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급조건, 지급액, 재정여건 등을 집중 논의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함
- 기본계획(안)은 2019년 1월 마련하였는데, ‘사업명,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¹⁵⁾’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TF에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등과 일정 합의하였음
- 지급금액 설정이 주요 쟁점이었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지급단가·재원비율은 전라북도과 시·군이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고 단체장 결정에 따르기로 함
- 전라북도는 2019년 3월~6월, 14개 시·군과 6회에 걸친 정책 실무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함
- 2019년 4월~5월, 삼락농정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4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그림 2-1] 전북 공익형직불제 논의 TF 회의

-
- 15) 지원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며, 사업명은 ‘농민 공익수당’으로 결정하고,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지급액은 의사결정권자에 따름

■ 계획의 마련

-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의 논의와 권역별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은 2019년 6월 삼각농정위원회 의사결정 단위(운영협의회)에서 확정되었음
- 2019년 6월, ‘농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시·군(14개)의 협의결과(재원비율, 지급단가 등)에 대해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설명 간담회를 갖고 정책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함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영과 동의하면서, 예산과 금액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라북도-시·군의 정책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2019년 7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농민 공익수당’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원분담, 지원금액 등을 최종 결정함 (업무협약서 참조)
- 2019년 7월, 전라북도는 지역농정 시책으로 결정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였고, 2019년 9월까지 협의를 진행·완료함
- 2019년 7월,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기로 삼각농정위원회에서 합의함
- 조례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로 하였으며, 전라북도의회는 7월~8월 입법 예고 된 이후 2019년 9월 의결하고 2019년 10월 공포하였음



[그림 2-2]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도민 설명회

- 2019년 11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함 (총 613억원-도비 245, 시·군비 368, 재원분담률 40:60)
- 이후 전라북도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시·군의 정책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 계획의 보완

- 2020년 ‘농민 공익수당’의 지원사업 시행 이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가’에 대한 지원과 ‘양봉 농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음
- 어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양봉농가는 2021년부터 지원사업에 포함기로 함
- 이 과정 또한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의 전담 TF를 전문가, 관계자, 행정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였음
- 2020년 11월,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음



[그림 2-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과정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년 60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 총 사업비 642.8억원 (도 257.1 시·군 385.7) (2020년 기준, 농업인만)

■ 지원방법

- 년 1회 일괄 지급, 지역화폐 100%(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 지원조건

-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농가

■ 이행조건

- (필수-2) ①논과 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②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자율-1) ③농어업·농어촌 환경실천 협약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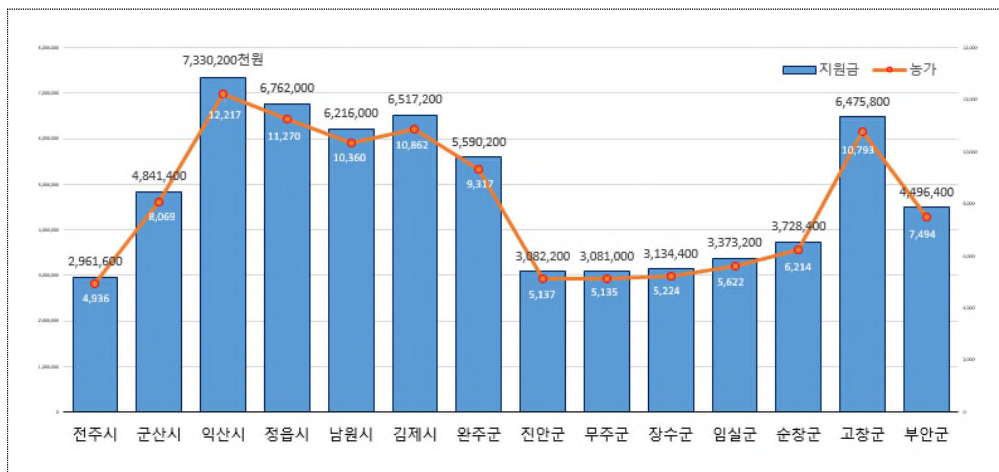
-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수시)

■ 추진체계

- 사업설명(교육), 지급신청(농가→이·통장→읍·면·동, 2월~4월), 대상자 확인(읍·면·동 확인과 전산입력, 4월~5월), 대상자 결정(시·군, 7월~8월), 대상자 제출·확정(예산교부, 8월~9월), 지급(9월), 이행점검(12월), 보조금 정산(다음연도 1월), 사후관리(수시)

■ 지원예산

- 2020년 시행 첫해 14개 시·군의 107,134농가를 대상으로 총 64,280,4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방법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상이함
- 2021년에는 14개 시·군의 112,650농가를 대상으로 총 67,590,000천원을 지급함
- 어가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라북도 사업추진 담당부서가 달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부터는 양봉농가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림 2-4]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과 지원농가 (2021년)

[표 2-1]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

시 군	2020년		2021년		지급방법
	농가 (호)	사업비 (천원)	농가 (호)	사업비 (천원)	
전주시	4,634	2,780,400	4,936	2,961,600	카드
군산시	7,730	4,648,000	8,069	4,841,400	지류
익산시	11,646	6,987,600	12,217	7,330,200	카드
정읍시	10,707	6,424,200	11,270	6,762,000	카드, 모바일
남원시	9,906	5,943,600	10,360	6,216,000	지류
김제시	10,351	6,210,600	10,862	6,517,200	지류, 카드
완주군	8,913	5,347,800	9,317	5,590,200	지류
진안군	4,834	2,900,400	5,137	3,082,200	지류
무주군	4,890	2,934,000	5,135	3,081,000	카드
장수군	4,979	2,987,400	5,224	3,134,400	지류
임실군	5,352	3,211,200	5,622	3,373,200	지류, 카드
순창군	5,932	3,559,200	6,214	3,728,400	지류
고창군	10,152	6,091,200	10,793	6,475,800	지류, 카드
부안군	7,108	4,264,800	7,494	4,496,400	카드
합 계	107,134	64,280,400	112,650	67,590,000	

주 1. 어가 5천호(30억원)은 별도 편성

2. 2021년부터는 양봉농가(총 500농가)를 추가

자료 : 전라북도 '업무자료'

※ 추진경과 (요약)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검토를 제안('18년)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제안('18.3.)
- 민선 7기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 공약('18.5.) → 삼락농정위원회 실무 TF 구성·운영('18.3~6.) → 도민(농업인) (권역별)설명회('19.4.)
- 전라북도와 시·군 업무협약 체결('19.7.) → 전라북도 지원조례 제정('19.10.) → 시범사업 시행('20.3.)

「농민 공익수당」 업무 협약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함께 도입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농민 공익수당」(이하「사업」)의 성공적 도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전라북도와 시·군은 협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최초 시행은 2020년으로 한다.
2. 농가 지원액은 연 60만원으로 한다.
3. 소요비용은 전라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제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도와 시·군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1일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주시	전주 시장
 군산시	군산 시장
 익산시	익산 시장
 정읍시	정읍 시장
 남원시	남원 시장
 김제시	김제 시장
 완주군	완주 군수
 진안군	진안 군수
 무주군	무주 군수
 장수군	장수 군수
 임실군	임실 군수
 순창군	순창 군수
 고창군	고창 군수
 부안군	부안 군수

능하진
김영준
장원태
유진성
이관구
박준배
박성만
최성용
황민홍
김영태
신민준
홍승주
유기상
최익현

[그림 2-5]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14개 시·군 업무 협약서

3. 사업지침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년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일 것¹⁶⁾
 - 단,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업 종사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
-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할 것¹⁷⁾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부부도 한명에게만 지급

■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자

-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①~⑥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②, ③, ④의 경우 해당자가 속해 있는 경영체 전체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① 보조금 신청한 년의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②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16) 농업인은 ①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를 참조

17) ①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1천㎡ 이상, ②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 이상, ③밤나무 5천㎡ 이상, ④잣나무 1만㎡ 이상, ⑤표고자목 20㎡ 이상, ⑥산림용 종자 묘목 생산업자, ①~⑥까지 이외 목본·초본식물 3만㎡ 이상

- ③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 ④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 ⑤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⑥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준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제출서류 (괄호 안은 제출대상)

- ①지급신청서, ②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마을/농가), ③마을 경작사실 확인 심사표(마을단위), ④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⑥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동의서 등

[표 2-2]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① 지급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제출 생략불가
②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농가)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제출 생략불가
③ 마을 경작사실 확인 심사표 (마을단위)	• 마을단위 신청 농가 • 개인단위는 경작사실 확인서로 대체	매년제출
④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내(외) 경작 사실 확인서 · 영농기록	• 주소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 신청 전년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 농촌 외 주소자로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해야 하는 농가	
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전년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	

자료 : 전라북도 사업시행 지침

■ 이행조건 (마을 및 농가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 ‘필수 실천사항’ 2개 항목을 실천하고, ‘선택 실천사항’ 3개를 적극 실천함을 협약

- (필수사항, 2개 사항) ①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 ②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
- (선택사항, 3개 사항) ①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주기를 기준으로 밭짚 환원을 실천, ②깨끗한 공기 정화를 위해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음, ③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 ④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공간의 청소 등 적극 참여

[표 2-3]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비교

농민 공익수당 조례 준수사항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농업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 제한) 제1항 등
관련 법령 준수	법상 의무 및 타 법률상 의무
농지, 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적극 참여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기준 초과 농산물의 유통 금지)
농지 형상 유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가축 방역, 적정 사육밀도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전통문화 계승	
정례교육 참여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자료 : 유찬희(2021)

■ 추진체계

- ①신청·접수 전, ②사업 신청·접수, ③전산시스템 입력, ④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⑤지급대상자 결정(시군), ⑥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⑦지급, ⑧지급자 이행점검 반영, ⑨보조금 정산, ⑩사후관리

[표 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	(전년)12월~ (당년)1월	-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도,시군) -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시군)
② 사업 신청·접수	2월~4월	· 신청서 제출(농가 → 마을아동장 → 읍·면·동사무소)
③ 전산시스템 입력 ④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4월~7월	- 전산시스템 구축 시 전산 입력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등 공부 확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사망발소, 전출, 실제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제외 대상 확인
⑤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7월~8월	- 지급 및 제외대상자 통보 - 이의신청기간 운영, 현장확인 등 실시
⑥ 지급대상자 제출 및 확정	8월	- 시군별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 예산 교부(도 → 시군)
⑦ 지급	9월	· 지역별 지역화폐 등 지급
⑧ 지급자 이행점검 반영	9월~	· 지급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결과 반영으로 부적합 판정시 반환 통보
⑨ 보조금 정산	익년 1월	· 정산보고(금융기관 → 시군 → 도)
⑩ 사후관리	연중	·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대상 확인 등

○ 전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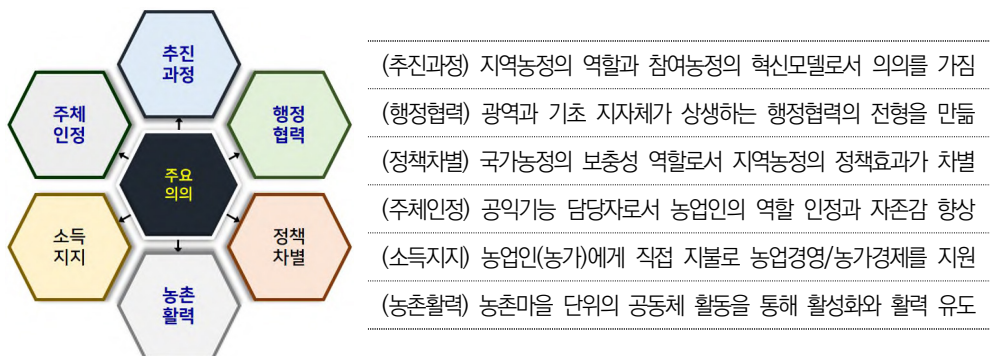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타 직불제 시스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행정 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 도모 (2020년)
- 농가 신청·접수에서 보조금 지급단계까지의 전산관리¹⁸⁾
 - 신청 농가 중복(동일세대, 배우자 등) 및 지급요건(주소 및 경영체 조건) 검증
 - 시·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

18) 시스템 체계는 「친환경 인증확대」 H/W에 패키지형 S/W만 추가 도입

4. 사업의의

가. 사업의의 개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지침’의 추진배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지역농정의 조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공익기능 수행자로서의 농업인 자긍심 고취’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정이 추진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조치를 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삼각농정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둘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¹⁹⁾에 대한 농업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지하는 우호적 여건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기상재해·미세먼지 등 환경의 문제와 결부시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셋째, 농업생산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을 영위하고 농촌을 지켜 나가는 주체로 농업인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담당자로 지위를 인정하고 정책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점에 의의와 특



[그림 2-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의의

1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는 환경보전(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 아름다운 농촌경관 유지, 휴식의 장 제공,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촌활력 증진 등을 꼽을 수 있음

징을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의의는 정책의 배경과 과정, 지원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①추진과정, ②정책차별, ③행정협력, ④주체인정, ⑤소득지지, ⑥농촌활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나. 사업 의의와 특징

① (추진과정) 지역농정의 역할과 참여농정의 혁신모델로서 의의를 가짐

-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면 전라북도 농정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량을 유지해 왔는데, 광역단위 지역농정의 역할(기획 등), 농업현장의 참여농정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적극적 지역농정은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등이 현장의 필요·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추진체계’로 제도화되었으며, 공식화된 농정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책수단(정책사업 등)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지역농정 혁신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② (행정협력)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상생하는 행정협력의 전형을 만들

- 광역 지자체인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기초지자체 시·군의 정책을 협력·조정하고 광역단위로 정책 효과를 높여내는 역할이 요구되지만, 지자체의 행정추진·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정책의 협력적 행정의 실행과 재정 마련 등에 있어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
- 광역-기초(도-시·군) 지자체가 추진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공공의 역할을 공유하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협약하였는데, 특히 시·군별 재정여건 차이를 설득과 합의로 행정 협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점이 특징임

③ (정책차별) 국가농정의 보충성 역할로서 지역농정의 정책효과를 차별

- 농업·농촌 정책이 다양화·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국가농정과 지역농정’의 기능을 어느 수준에서 정립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분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지방

자치제도의 진전과 역량축적 등으로 정책 영역의 경계가 중첩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국가가 공익직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농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요구에 자자체는 자체농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목적이 유사(동일)할 수 있겠지만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더 실효적일 수 있음

④ (주체인정) 공익기능 담당자로서 농업인의 역할 인정과 자존감을 향상

- 농업인은 이중적 어려움(농업생산의 불안정, 농촌생활의 낙후)에 처해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확산되어 지역을 유지하고 농업을 지탱하는 농업·농촌 현장 주체에 대한 사회적지지 또한 악화되어 농정 현안은 이른바 ‘정치재(政治財)’로 부각·이해되고 있음
- 이 사업은 정책 목적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유지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역의 사회적인 지지(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공식적 선언으로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함

⑤ (소득지지) 농업인(농가)에게 직접 지불로 농업경영과 농가경제를 지원

-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형태는 직접 지불 방식의 지원금 지급인데,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이 농가경제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가처분소득을 늘려 일정한 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활동에 사용할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일정하게 늘려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음

⑥ (농촌활력) 농촌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성화와 활력을 유도

- 이 사업의 기획과 내용마련 과정에서는 과소화된 농촌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자가 가능한 농촌마을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결국 지원의 준수사항에 농촌마을 활력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반영되었음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준수사항(이행조건-자율)에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농촌마을 협약을 통해 공식화하며,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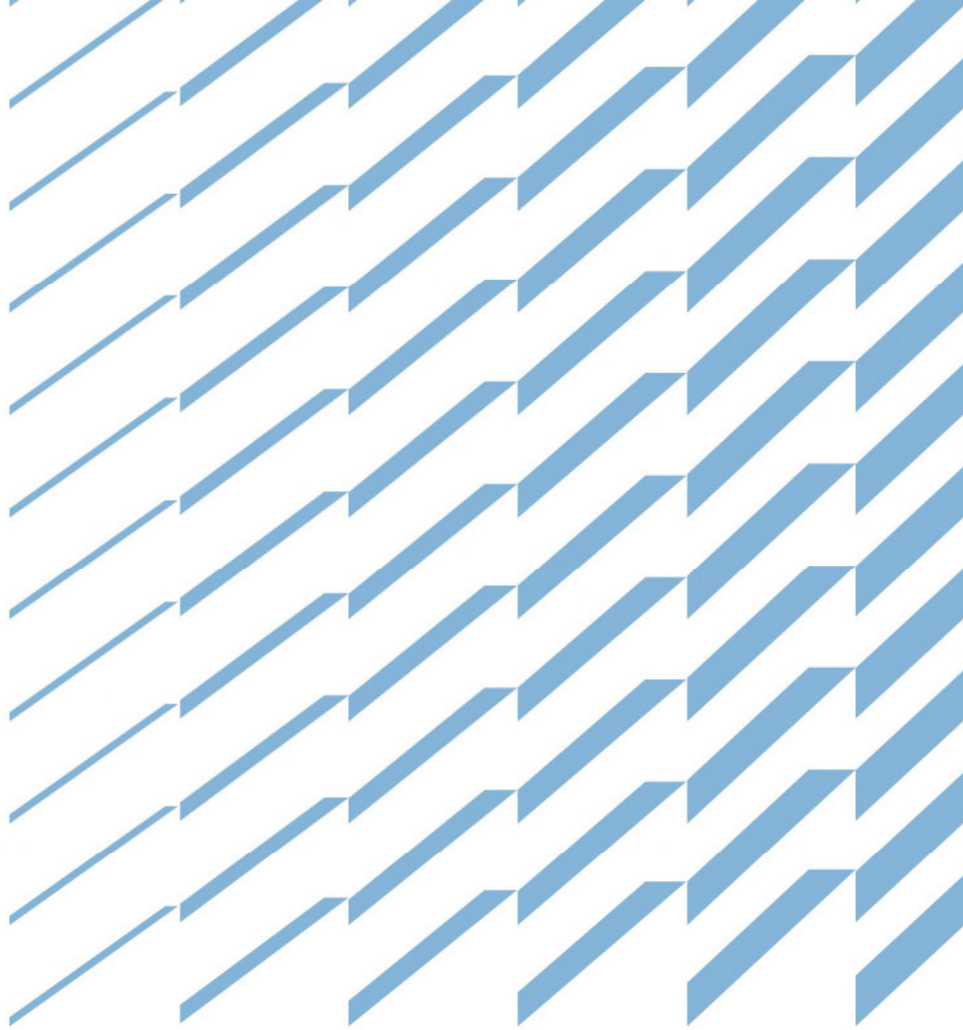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

- 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함 ('19.7.5)
- 보건복지부는 전라북도가 요청한 신설 변경 사업을 검토하고, '조건부 협의 완료'로 결정하여 통보함 ('19.9.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검토 결과
 -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함
 - 다만,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중앙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없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복 문제 제기가 가능함
 - 특히 광역/기초 단위 유사 정책 도입 시, 광역-기초 간 공식적 합의 등을 통해 제도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원화 필수임
 - * 기 협의 완료한 기초지자체(고창군) 사업은 광역도 사업도입('20년) 전까지 시행 후 폐지하고, '20년 도 사업과 통합 시행 예정(시군 업무협약 완료)
 - 재정여건 대비 재정 부담이 상당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소득 수준별 또는 경영 규모별 지원수준의 조정, 관내 유사 제도 통합 조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20년(안))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래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판단함
 - ①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 ②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 수준별 농가/비농가 현황, 경영 규모별 농가소득 수준 등 객관적 통계 자료

- ③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 변화 및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 현황
- ④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간 통합·조정 필요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조건부 협의를 받아 협의조건 이행을 추진

[표 2-5] 사회보장제도 협의 주요내용

no	조건부 협의 제시의견 (요약)	확인사항 및 대응계획
1	중앙정부의 공익직불제 사업과 중복성 문제 검토	- 정부 공익직불제와 중복성 없음을 확인 - 강원도의 유사사업 협의 시 해당 조건은 삭제하기로 함
2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공식적 합의로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일원화	기 완료 : '19.7.1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 (재정분담, 추진방식, 추진일정 등)
3	재정여건 대비 재정부담이 상당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도-시군이 재정분담하여 재정부담 완화 (도비 40%, 시군비 60%)
4	-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 (목적) 농가소득 안정, 농촌인구 감소 최소화, 공익적가치 증진 등 - 소득수준별 농가/비농가 현황, 경영규모별 농가소득 수준 등 개관적 통계자료 제시	2021년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개최 (충남·전남·전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기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의 어려움을 인지, 해당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작성 지침을 제시 (농업인 설문조사 질적 지표 활용 등)



제3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실행진단

1. 실행진단 조사개요
2. 지원정책 인지수준
3. 준수사항 이행수준
4. 지원금의 사용현황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제3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실행진단

- 이 장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구조화하고,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와 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실행수준’을 진단하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인지수준, 준수사항 이행수준 진단, 농어민 공익수당의 사용현황, 지원사업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농업인 54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첫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농업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전반적 인지수준과 인지경로,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 세부내용의 알고 있는 정도와 만족하는 정도, 사업내용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교’ 등을 다루고자 함
- 둘째, 농어민 공익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농업인은 어느 수준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어려운 정도, 이행수준과 어려움 비교’ 등을 살펴 보면서 현장의 수용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된 지원금(지역화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사용처, 사용처별 지출 비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루고자 함
- 넷째, 농어민 공익수당의 시행지침 수준에서 수정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농업인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살펴보고자 함
- 이행조건 강화 또는 완화, 신청절차와 지급기준 개선,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 강화, 사용처 확대와 분할지급,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상향 추진, 재정여건 고려 등 (전라북도 회의기구 TF에서 제출된 내용)

1. 실행진단 조사개요

가. 조사내용과 방법

■ 조사목적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정책 수용도(이해·만족도, 이행수준, 사용용도, 도움정도, 개선과제)를 조사하여 정책의 실행수준을 진단하고자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함
- 자체적인 시책사업 실행 2년차 시점에서 도정의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실행을 진단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마련의 근거로 삼고자 함
- 지원사업 도입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라 제출 자료에 답아야 할 사업의 만족도, 기대효과 등에 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것도 조사의 목적임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성과에 관한 근거자료 마련을 요청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가 농업인의 지원사업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한 사업실행 진단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내용과 세부항목을 설정하였음²⁰⁾

■ 조사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실행진단을 위한 조사내용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익수당 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시한 ‘농어민 공익수당 진단 설문조사표’를 기준으로 조사내용과 항목을 설정하였음²¹⁾
 - 이에 앞서 연구진은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을 ‘전북 농어민공익수당 논의 TF’

20)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진단 조사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지자체 간담회(‘21.6.30)’에서 이 연구를 통해 마련한 전북연구원의 조사표를 제시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지원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자체에 설문조사표를 제안하였음(‘21.11.30)

21) ‘농어민 공익수당 진단 조사표’는 ‘21.6.3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지자체 간담회’에서 전북연구원이 조사표를 제시,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21.11.30. 제시하였음

회의에 제출하여 검토하였으며, TF 위원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음²²⁾

- 전반적 조사내용은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목적, 지원방식, 이행조건, 시행체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항목을 정하였음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지역농정의 시책사업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요소를 ‘정책인지, 정책만족, 이행수준, 기대효과’ 등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는데, 정책대상자 본인의 수준을 스스로 평가·진단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첫째, 지원사업의 구성요소인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원방법, 지원조건, 이행조건, 사후관리, 추진체계’ 등에 대해 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의 ‘인지정도, 만족정도, 이행수준’ 등을 측정하였음
- 둘째, 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거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정도(효과)’를 정책의 목적에 근거하여 측정하였음
- 셋째,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제출된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등으로 나누어 ‘개선과제’의 요구수준을 측정하였음
- 넷째,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파

[표 3-1] 설문조사 주요영역과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지역, 실거주 지역, 성별, 연령, 영농경력, 영농규모, 경영형태, 농가소득 등	8
사업인지	정책전반, 인지경로, 지급이유,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9
사업만족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7
이행수준	이행수준과 어려움(논·밭형상 유지, 비료 농약 감축, 농촌환경 실천협약)	6
사 용 처	사용처, 사용처 우선순위, 사용처별 지출액	3
도움정도	영농활동, 농가경제, 생산유지, 마을활력, 농촌유지, 공익기능, 자존감, 친환경실천, 영농규모 확대, 공동체 활동 참여	9
개선사항	단가인상, 개인지급, 이행조건 완화/강화, 분할지급, 점검강화, 절차간소, 사용처 확대, 부정수급 점검, 지급기준 완화 등	10

22)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TF 회의검토(‘21년 8월), 위원 간 의견 수렴(‘21년 9월)

악하였고, 이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 조사항목은 총 52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변수) 중 ‘인지정도, 만족정도, 이행수준, 도움정도, 개선과제’ 등은 11점 리커트 척도²³⁾를 적용하여 응답자 수준의 차이를 최대화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의 정책자료 이용편의를 위해 분석에서는 11점 척도를 2점 척도(아니다, 그렇다)와 3점 척도(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4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등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농업인(농가)를 모집단이며, 표본은 ‘지역, 연령, 성’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으로 추출하였음
- 연구기관(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 연구수행 지침(연구경비 지출 등)을 감안하여 조사기획 단계에는 총 500명으로 표본을 설계하였음
- 코로나19로 현지조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연령과 성별은 실제 조사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고, 설문에 계획보다 많은 총 549명이 응답(유효표본)하여 조사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음²⁴⁾
- 조사내용이 비교적 많고, 특히 농업인의 생각과 판단이 조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조사원의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²⁵⁾하였고, 조사기간은 2022.1.20.~2.3일

나. 응답자 주요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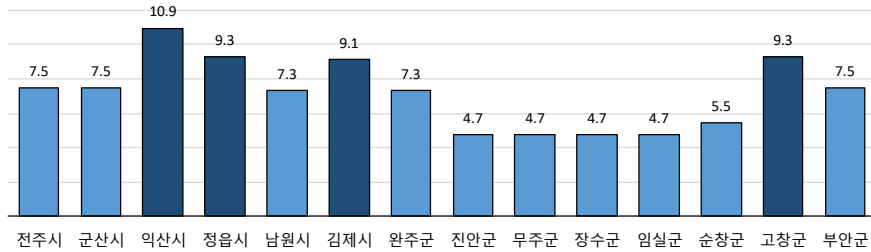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업인은 총 549명이며, 남성 53.0%, 여성은 47.0%의 비율임
-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익산시(10.9%), 정읍시·고창군(각 9.3%), 김제시(9.1%), 군산시·부안군·전주시(각 7.5%), 남원시·완주군(각 7.3%), 순창군(5.5%), 임실군·진안군·장

23) 11점 척도는 응답자 편의를 위해 0(매우 불만족) ~ 5(보통수준) ~ 10(매우 만족)으로 제시하였음

2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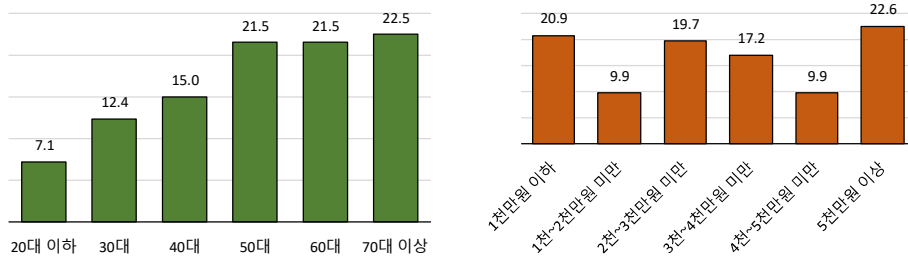
25) 농업·농촌 현장 조사원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의 협조로 조사원을 선발하였음. 조사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뤄졌음

수군·무주군(각 4.7%) 등의 순임



[그림 3-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 응답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는 농촌마을 33.0%, 읍·면 소재지 39.4%, 시내(동지역) 27.6% 등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이하(7.1%), 30대(12.4%), 40대(15.0%), 50대(21.5%), 60대(21.5%), 70대 이상(22.5%) 등의 분포를 보임
- 농가소득은 1천만원 이하 20.9%, 1천~2천만원 미만 9.9%, 2천~3천만원 미만 19.7%, 3천~4천만원 미만 17.2%, 4천~5천만원 미만 9.9%, 5천만원 이상 22.6%임
- 평균 영농경력 32.6년으로, 10년 이하(38.2%), 30~40년 미만 (14.8%), 20~30년 미만 50년 이상(12.5%), 40~50년 미만(11.3%), 10~20년 미만(10.7%)의 순임
- 응답 농업인의 '경영형태'는 단독경영이 66.3%, 부부 공동경영이 33.7%로 조사됨
- 응답자의 농가소득은 평균 3,536만원이며, 영농규모는 평균 논 23,704m²(약 7,183



[그림 3-2] 응답자의 연령과 소득수준별 분포 (%)

평), 밭 5,488㎡(약 1,663평), 축산은 평균 402마리(한우+양돈)로 조사됨

[표 3-2] 설문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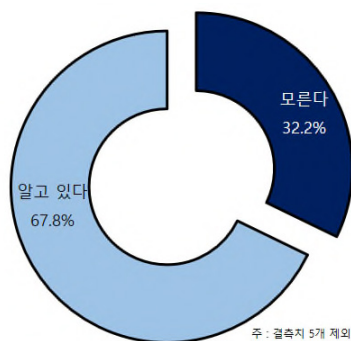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성	291	53.0	시군	전주시	41	7.5
	여 성	258	47.0		군산시	41	7.5
	소 계	549	100.0		익산시	60	10.9
연령	20대 이하	39	7.1		정읍시	51	9.3
	30대	68	12.4		남원시	40	7.3
	40대	82	15.0		김제시	50	9.1
	50대	118	21.5		완주군	40	7.3
	60대	118	21.5		진안군	26	4.7
	70대 이상	123	22.5		무주군	26	4.7
	소 계	548	100.0		장수군	26	4.7
	영농경력	10년 이하	207		38.2	임실군	26
10~20년 미만		58	10.7		순창군	30	5.5
20~30년 미만		68	12.6		고창군	51	9.3
30~40년 미만		80	14.8		부안군	41	7.5
40~50년 미만		61	11.3		소 계	549	100.0
50년 이상		68	12.6	실제거주	농촌마을	92	33.0
소 계		542	100.0		읍·면소재지	110	39.4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108		20.9	시내(동지역)	77
	1천~2천만원 미만	51	9.9		소 계	279	100.0
	2천~3천만원 미만	102	19.7	기타(평균)	영농경력(년) (n=542)		32.6
	3천~4천만원 미만	89	17.2		농가소득(만원) (n=518)		3,536
	4천~5천만원 미만	51	9.9		영농규모	논-규모(㎡) (n=435)	23,704
	5천만원 이상	117	22.6			밭-규모(㎡) (n=395)	5,488
	소 계	518	100.0			축산-규모(마리) (n=45)	402
경영형태	단독경영	330	66.3				
	공동경영	168	33.7				
	소 계	498	100.0				

주 : 결측치 제외

2. 지원정책 인지수준

가. 전반적인 인지수준과 인지경로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67.8%이며, ‘잘 모른다’는 32.2%로 나타남



[그림 3-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인지수준

[표 3-3] 인지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7.44	7.79	7.5	7.44	6.89	6.81
T/F	2.66**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1천~2천만원	2천~3천만원	3천~4천만원	4천~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평균	6.84	6.92	7.34	7.48	7.04	7.85
T/F	2.83**					
경영형태	단독경영	공동경영	준수사항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
평균	7.19	7.52	평균	3.33	5.96	7.84
T/F	-1.57*		T/F	6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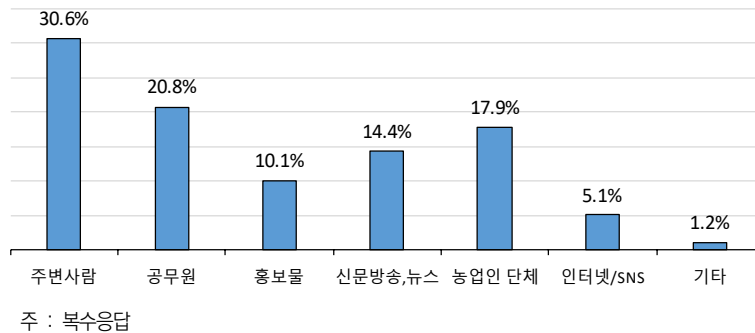
주 1. 11점 리커트 척도

2. *p < 0.05. **p < 0.01. ***p < 0.001.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0대까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음
- 소득수준으로는 농가소득 2천만원 이상이, 경영형태에서는 공동경영이 상대적으로 알

고 있는 수준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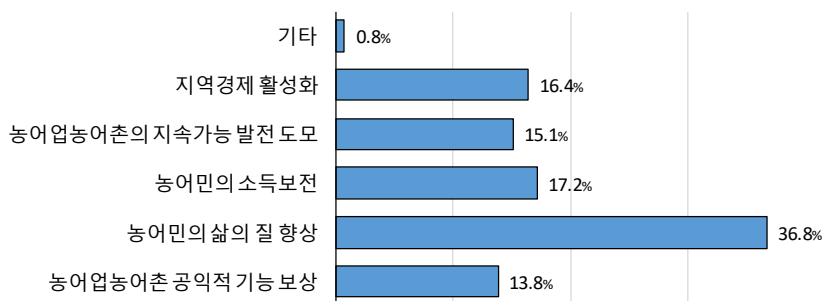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농정의 신규 시책이고 사업초기이므로 이를 알게 된 ‘인지경로’를 조사하였음 (복수응답)
- 인지경로 조사결과 ‘주변사람이 30.6%로 비중이 높았고, 공무원(20.8%), 농업인 단체 (17.9%), 신문방송, 뉴스(14.4%), 홍보물(10.1%), 인터넷·SNS(5.1%)’ 등의 순임



[그림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6.8%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5]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

- 이어 농업인의 소득보전(17.2%), 지역경제 활성화(16.4%),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도모(15.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상(13.8%) 순으로 지원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소득지원+가계지원+생활지원’(54.0%)을 직접적인 지원이유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한 이유(농업·농촌 지속, 지역경제 활성화)(31.5%)도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 세부내용의 인지정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등 7개 항목인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음
- 세부내용(7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알고 있는 수준은 평균 6.99(11점 척도)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정도 평균값보다 높은 항목은 지급방법(7.52), 지급대상(7.21), 지급수준(7.05)이었음
- 반면, 신청방법(6.98), 이행조건(6.78), 확인과정(6.71), 정책목표(6.69)는 다른 세부내용보다 인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구분	주요내용	알고 있는 수준	
		평균	std
정책목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농어업인 자금심 고취, 농촌유지 지원 등	6.69	2.37
이행조건	(필수)논밭 형상 기능 유지, (필수)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자율)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6.78	2.43
지급대상	신청년 기준 2년이상 도내거주(주소), 2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 종사 농가	7.21	2.37
지급수준	농가당 년 60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7.05	2.48
지급방법	년 1회 일괄지급, 지역화폐 100%	7.52	2.31
신청방법	농가→이동장→읍·면·동(2월~4월), 행정확인(4월~9월), 농가지급(9월), 이행점검(~12월)	6.98	2.40
확인과정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수시)	6.71	2.43
전 체		6.99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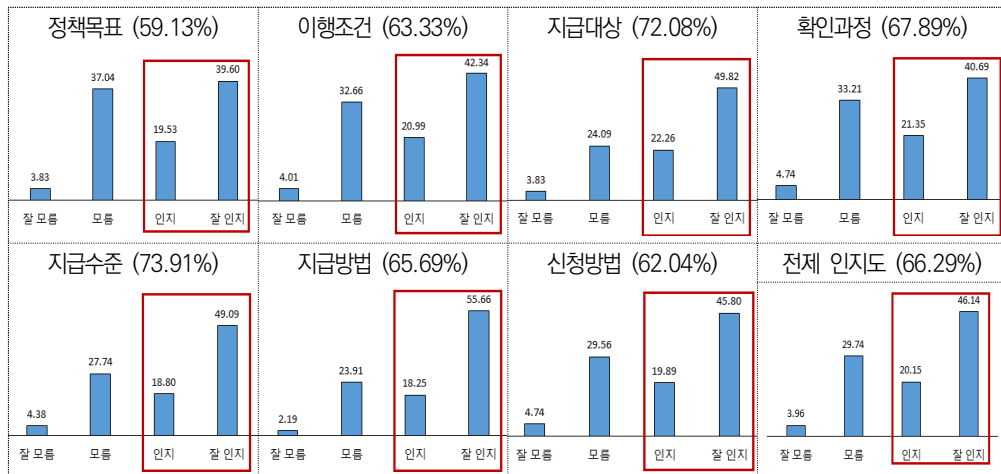
주 : 11점 리커트 척도 0(전혀 모른다) ~ 5(보통이다) ~ 10(매우 잘 안다)

- 이상의 세부항목 인지정도를 4개 척도(전혀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로 조정하여 ‘알고 있는 수준’을 비율로 살펴본 결과, 66.30%가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알고 있는 수준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급방법(73.91%), 지급대상(72.08%)’은 상대적으로 인지정도가 높으며, ‘지급수준(67.89%), 신청방법(65.69%), 이행조건(63.33%), 확인과정(62.04%), 정책목표(59.13%)’ 등의 순임

[표 3-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

구분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전 체
전혀 모른다	3.83%	4.01%	3.83%	4.38%	2.19%	4.74%	4.74%	3.96%
모 르 다	37.04%	32.66%	24.09%	27.74%	23.91%	29.56%	33.21%	29.74%
알고 있다	19.53%	20.99%	22.26%	18.80%	18.25%	19.89%	21.35%	20.15%
잘 알고 있다	39.60%	42.34%	49.82%	49.09%	55.66%	45.80%	40.69%	46.14%

주 :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모른다 ~ 4-잘 알고 있다)로 변환



[그림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 (종합)

- 세부내용별로 인지정도를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세부내용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을수록, 준수사항의 이행이 높을수록 알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농가 소득	1천만원 이하	6.49		6.53		6.77		6.90		7.04		6.48		6.36	
	1천~2천만원	5.80		5.65		6.69		6.69		7.29		6.31		5.90	
	2천~3천만원	6.80	2.78 **	6.87	3.72 ***	6.97	3.34 ***	6.60	2.05 *	7.27	3.16 ***	6.98	3.26 ***	6.66	3.20 ***
	3천~4천만원	6.60		6.88		7.22		6.98		7.39		7.06		7.01	
	4천~5천만원	6.46		6.62		7.38		7.46		7.72		7.10		6.46	
	5천만원 이상	7.17		7.29		7.85		7.50		8.14		7.57		7.26	
준수 사항 이행	낮은 수준	2.23		2.23		1.77	120.8 3	1.69	124.4 7	3.08	111.4 7	2.38		2.54	
	보통 수준	5.30	79.84 ***	5.20	93.70 ***	5.67	***	5.32	***	5.91	***	5.39	98.37 ***	5.18	82.31 ***
	높은 수준	7.34		7.51		7.96		7.86		8.27		7.69		7.41	

주 : *p < 0.05. **p < 0.01. ***p < 0.001.

라. 세부내용의 만족수준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등 7개 항목) 각각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음
- 세부내용 7개 항목의 전반적인 만족하는 수준은 평균 6.92(11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평균 만족수준을 상회하는 항목은 지급방법(7.24), 지급대상(7.17), 신청방법

[표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구 분	주요내용	만족하는 수준	
		평균	std
정책목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농어업인 자긍심 고취, 농촌유지 지원 등	6.85	2.36
이행조건	(필수)논밭 형상 기능 유지, (필수)비료·농약 적정사용 준수, (자율)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6.97	2.31
지급대상	신청년 기준 2년이상 도내거주(주소), 2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 종사 농가	7.17	2.35
지급수준	농가당 년 60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6.23	2.78
지급방법	년 1회 일괄지급, 지역화폐 100%	7.24	2.53
신청방법	농가→이통장→읍·면·동(2월~4월), 행정확인(4월~9월), 농가지급(9월), 이행점검(~12월)	7.06	2.40
확인과정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수시)	6.91	2.38
전 체		6.92	2.47

주 : 11점 리커트 척도 0(매우 불만족한다) ~ 5(보통이다) ~ 10(매우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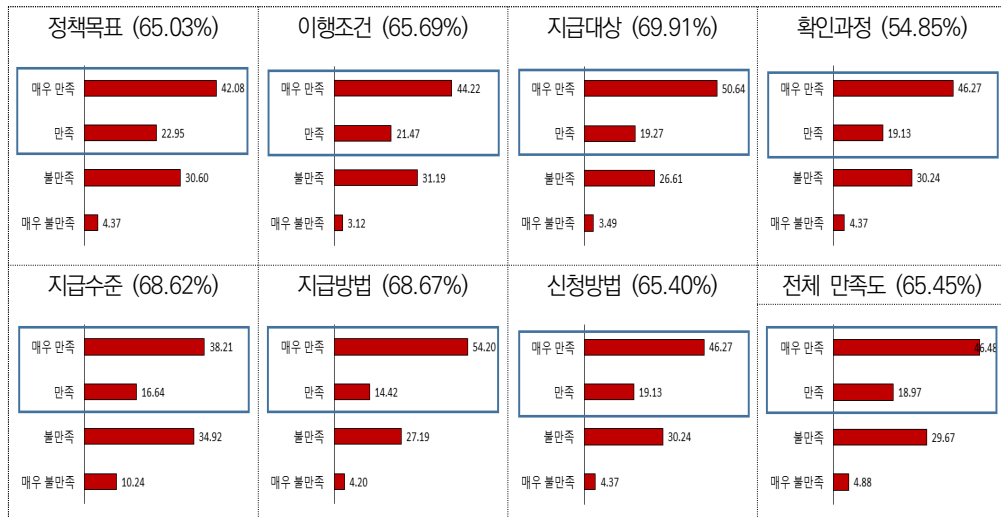
(7.06), 이행조건(6.97)이었음

- 반면, 신청방법(6.98), 이행조건(6.78), 확인과정(6.71), 정책목표(6.69)는 평균 만족정도(6.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상의 만족수준을 4개 척도(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로 조정하여 '만족하는 수준'을 비율로 살펴본 결과, 65.45%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만족하는 비율을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지급대상(69.91%), 신청방법(68.67%), 지급방법(68.62%), 이행조건(65.69%)'이 높고, '확인과정(65.40%), 정책목표(65.03%), 지급수준(54.85%)' 순임

[표 3-8]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구분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전 체
매우 불만족한다	4.37%	3.12%	3.49%	10.24%	4.20%	4.37%	4.37%	4.88%
불만족한다	30.60%	31.19%	26.61%	34.92%	27.19%	26.96%	30.24%	29.67%
만족한다	22.95%	21.47%	19.27%	16.64%	14.42%	18.94%	19.13%	18.97%
매우 만족한다	42.08%	44.22%	50.64%	38.21%	54.20%	49.73%	46.27%	46.48%

주 :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만족한다 ~ 4-매우 만족한다)로 변환



[그림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의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종합)

- 세부내용별로 만족수준을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세부내용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잘 알수록, 준수사항의 이행이 높을수록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음

[표 3-9]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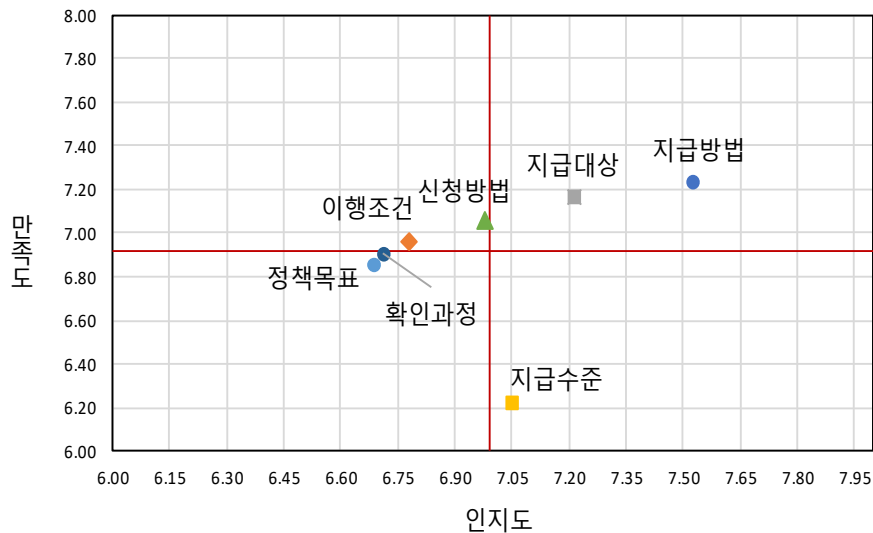
항목	세부항목	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방법		신청방법		확인과정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인지수준	1천만원 이하	2.46	108.47***	2.77	101.26***	2.69	93.45***	2.54	58.08***	2.77	102.38***	2.77	126.98***	2.54	121.74***
	1천~2천만원	5.43		5.59		5.88		4.86		5.73		5.47		5.39	
	2천~3천만원	7.71		7.77		7.96		7.04		8.15		7.99		7.82	
준수사항이행	낮은 수준	2.92	73.21***	3.38	65.05***	3.23	54.43***	3.15	21.40***	3.08	78.64***	3.08	65.51***	3.00	77.51***
	보통 수준	5.45		5.65		6.05		5.37		5.67		5.73		5.44	
	높은 수준	7.50		7.58		7.73		6.67		7.96		7.68		7.58	

주 : ***, **, *는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마. 사업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수준 비교

- 앞서 살펴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정도와 만족수준’을 종합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4개 영역(인지도-만족도)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음
-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항목(1사분면)은 지속관리 중요영역으로 ‘지급대상, 지급방법’이 해당함
- 인지도는 낮고 만족도가 높은 항목(2사분면)은 ‘이행조건, 신청방법’이며, 인지도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4사분면)은 ‘지급수준’인데, 인지도를 높이거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 나갈 영역임
- 인지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항목(3사분면)은 우선 시정할 영역으로 ‘정책목표, 확인과정’이 해당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내용의 항목별 ‘인지도-만족도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음

- ‘정책목표, 확인과정’은 이해도와 만족도 모두 낮으므로, 정책 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홍보, 교육 등)이 요구되며, ‘지급수준’은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지급수준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음



[그림 3-8]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내용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교

3. 준수사항 이행수준

가. 준수사항의 이행수준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필수 이행조건과 선택 이행조건’을 준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필수 이행조건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준수’이며, 선택 이행조건(자율)은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필수 및 선택의 ‘이행조건’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이행수준은 평균 7.74(11점 척도)로 평가되었음

- 필수 이행조건인 ‘논·밭의 형상 기능을 유지(7.79),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7.80)’은 평균 이상인데 비해, 선택(자율) 이행조건인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7.63)’은 평균 이하로 나타남

[표 3-10]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수준

구 분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비료·농약 등의 적절한 사용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전 체
본인이 이행하고 있는 수준	평균	7.79	7.80	7.63	7.74
	std	2.27	2.23	2.28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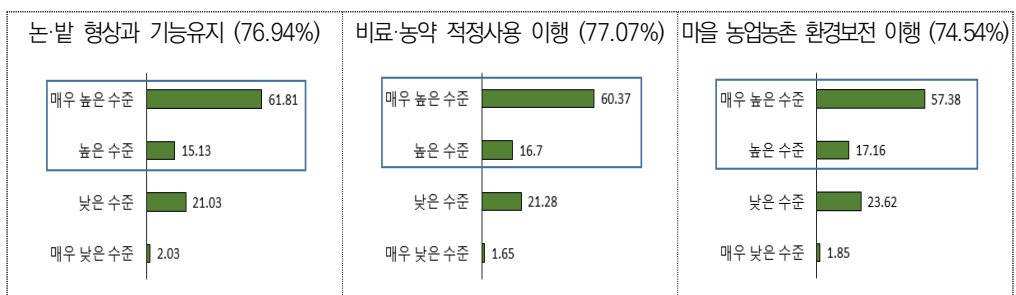
주 : 11점 리커트 척도 0(지키지 않는다) ~ 5(보통이다) ~ 10(잘 지킨다)

- 이러한 필수+선택(자율) 이행조건 이행수준을 4개 척도(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행수준’을 비율로 살펴본 결과,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6.18%로 조사되었음

[표 3-11]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비율

구분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비료·농약 등의 적절한 사용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전 체
매우 낮은 수준	2.03%	1.65%	1.85%	1.84%
낮은 수준	21.03%	21.28%	23.62%	21.98%
높은 수준	15.13%	16.70%	17.16%	16.33%
매우 높은 수준	61.81%	60.37%	57.38%	59.85%

주 :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낮은 수준 ~ 4-매우 높은 수준)로 변환



[그림 3-9]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에의 이행수준 (종합)

- ‘높은 수준’에서 실천하는 이행조건은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77.07%)’이었으며,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76.94%),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74.54%)’ 순으로

나타남

- 이행조건별로 이행하고 있는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하면, 농가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읍·면·동 거주자,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행수준이 높았음

[표 3-12]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실천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논·밭 형상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농가 소득	1천만원 이하	7.29	5.06***	7.42	3.63***	7.21	3.08***
	1천~2천만원	7.20		7.35		7.29	
	2천~3천만원	7.78		7.75		7.57	
	3천~4천만원	7.74		7.66		7.64	
	4천~5천만원	7.76		7.63		7.31	
	5천만원 이상	8.62		8.53		8.28	
실거주	농촌마을	8.00	5.67***	7.99	4.99***	8.01	2.56*
	읍·면 소재지	8.15		8.15		8.08	
	시내(동지역)	8.96		8.91		8.67	
인지도	잘 모른다	2.77	112.00***	3.00	121.18***	3.23	108.07***
	보통이다	6.53		6.47		6.29	
	잘 안다	8.58		8.61		8.46	
만족도	불만족한다	4.32	67.94***	4.45	72.32***	4.55	67.23***
	보통이다	6.89		6.85		6.63	
	만족한다	8.46		8.49		8.35	

주 : ***, **, *는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나. 준수사항 이행의 어려움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필수 및 선택(자율) 준수사항(이행조건)에 대해 농업인 본인이 ‘이행하는 데 어려움’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음
- 이행하는데 어려운 정도를 전체적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3.20(11점 척도)으로 평가되어 이행하는데 어려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준수사항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3.23),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3.22),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3.14)’으로 나타남

[표 3-13]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준수의 어려움

구 분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비료·농약 등의 적절한 사용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전 체
이행조건 준수의 어려움	평균	3.23	3.14	3.22	3.20
	std	2.6	2.55	2.53	2.56

주 : 11점 리커트 척도 0(전혀 어렵지 않다) ~ 5(보통이다) ~ 10(매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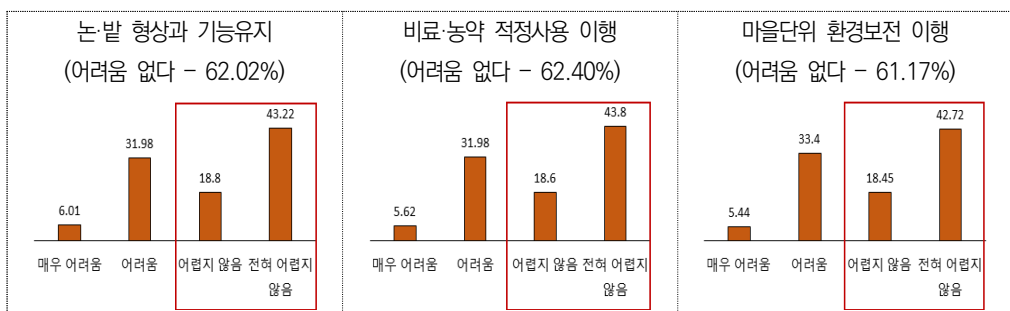
- 이러한 필수+선택 이행조건들의 어려움 수준을 4개 척도(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로 조정하여 ‘이행의 어려움’을 비율로 살펴본 결과, 61.86%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어렵지 않다’는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62.40%),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62.02%),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61.17%)’ 순으로 나타남

[표 3-14]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어려움 비율

구분	논·밭 형상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마을단위 환경보전	전 체
매우 어렵다	6.01%	5.62%	5.44%	5.69%
어렵다	31.98%	31.98%	33.40%	32.45%
어렵지 않다	18.80%	18.60%	18.45%	18.62%
전혀 어렵지 않다	43.22%	43.80%	42.72%	43.25%

주 :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어렵다 ~ 4-전혀 어렵지 않다)로 변환

[그림 3-10]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들의 어려움 정도 (종합)



- 3개의 이행조건별로 이행수준의 어려움을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농촌마을 거주

자, 사업내용의 이해도·만족도가 낮은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낮은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어려움 정도의 집단별 차이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논·밭 형상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실거주	농촌마을	3.03	2.62*	3.03	2.81*	3.08	3.53**
	읍·면 소재지	2.27		2.25		2.21	
	시내(동지역)	2.78		2.77		2.82	
인지도	잘 모른다	6.83	54.57***	6.58	62.52***	6.50	58.11***
	보통이다	4.46		4.47		4.51	
	잘 안다	2.46		2.34		2.44	
만족도	불만족한다	6.00	39.53***	5.95	46.04***	6.00	46.75***
	보통이다	4.16		4.15		4.24	
	만족한다	2.54		2.42		2.50	
준수 사항 이행	낮은 수준	7.31	123.60***	7.38	137.61***	7.38	123.23***
	보통 수준	5.28		5.24		5.20	
	높은 수준	2.71		2.19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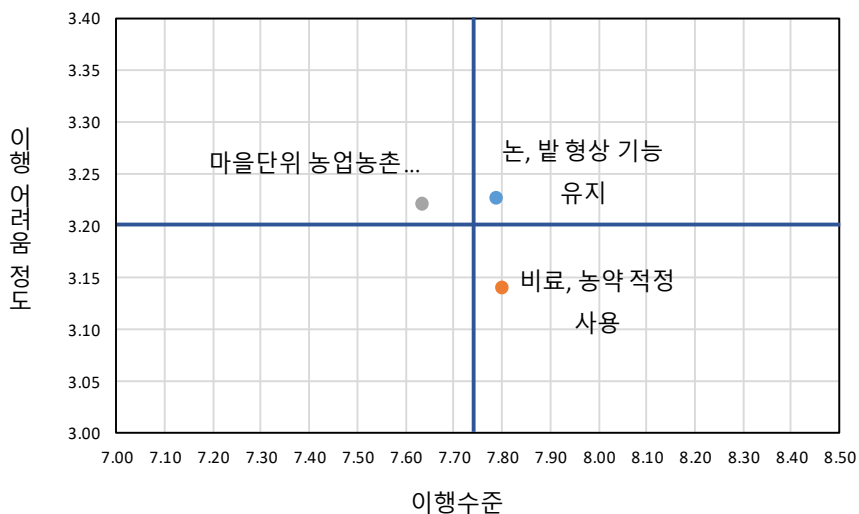
주 : ***, **, *는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다. 준수사항의 이행정도와 어려움 비교

- 앞서 살펴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3개(필수+자율) 이행조건(준수사항)의 ‘이행 수준과 어려운 정도’를 종합하여 이행수준-어려움을 기준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이행수준과 어려운 정도가 모두 높은 조건(1사분면)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인데,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활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행수준이 높지만 어려운 정도가 낮은 조건(4사분면)은 ‘비료·농약의 적정한 사용’으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를 해나가야 하겠음
- 반면,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실천이행’은 이행수준이 낮고, 어려운 정도도 비

교적 높게(2사분면) 나타나 참여와 이행을 위한 우선적인 대응이 요구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행조건의 이행수준과 어려움 정도 분석을 종합하면,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의 준수는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필수 이행조건인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이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선택 이행조건인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실천’은 자율 이행조건이지만, 이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 마을단위 환경보전 협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겠음²⁶⁾



[그림 3-11]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이행수준과 어려운 정도 비교

26) 자율 준수사항의 이행수준이 어렵지 않게 나타난 점은 실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음

4. 지원금의 사용현황

가. 공익수당 우선 사용처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처와 형태’를 파악하여 지원된 공익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파악하였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년 1회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전액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지류, 모바일 혼합)되고 있음
-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전액 사용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원된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사용내역)를 우선 순위로 파악하여 주된 사용처를 살펴보았음
- 지원금의 주된 사용처와 사용내역의 조사결과 1순위 농자재 구입, 2순위 생활용품 구입, 3순위 식재료 구입과 식사로 조사되었음
 - 1순위 사용처 : 농자재 구입(55.8%), 생활용품 구입(19.0%), 식재료 구입과 식사(13.0%)’ 등

[표 3-1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순위별 사용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자재 구입 등	305	55.8	73	14.1	93	18.7
생활용품 구입 등	104	19.0	239	46.1	114	22.9
식재료구입과 식사 등	71	13.0	147	28.3	184	37.0
자녀교육 등	22	4.0	18	3.5	25	5.0
문화·여가활동 등	10	1.8	7	1.4	19	3.8
의료·복지 등	30	5.5	33	6.4	55	11.0
기 타	5	0.9	2	0.4	8	1.6
합 계	547	100.0	519	100.0	498	100.0

주 : 결측치 제외

- 2순위 사용처 : 생활용품 구입(46.1%), 식재료 구입과 식사(28.3%), 농자재 구입(14.1%)’ 등
- 3순위 사용처 : 식재료 구입과 식사(37.0%), 생활용품 구입(22.9%), 농자재 구입(18.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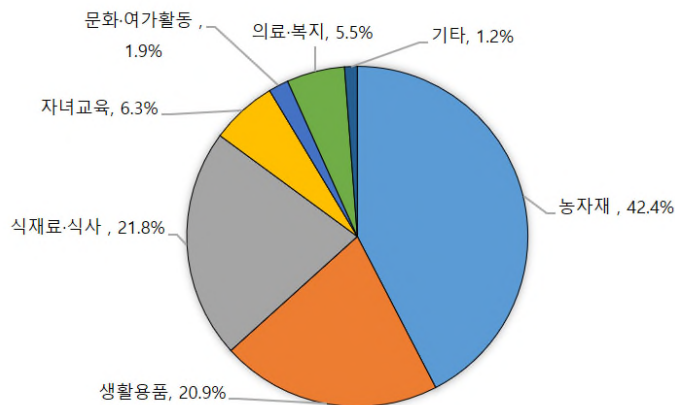
나. 사용처별 지출 비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사용처별 우선 순위는 주된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지원금(6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중으로 어느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음
- 사용처별 지원금의 지출액(비율)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성격 상 지역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하는 기준임
-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사용처별 지출 비율을 보면, 농자재 구입(42.4%), 식재료 구입과 식사(21.8%), 생활용품 구입(20.9%) 등의 비중으로 나타났음

[표 3-1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의 사용처별 비율

구분	농자재	생활용품	식재료·식사	자녀교육	문화·여가활동	의료·복지	기타	합계
비율	42.4%	20.9%	21.8%	6.3%	1.9%	5.5%	1.2%	100%
금액	254,400원	125,400원	130,800원	37,800원	11,400원	33,000원	7,200원	600,00원

- ‘농자재·식재료·생활용품 등의 구입’에 85.1%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녀교



[그림 3-12]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별 비중

육 6.3%, 의료·복지 5.5%, 문화·여가활동 1.9% 등의 순으로 지출하고 있음

- 지원금의 사용처별 지출비율은 농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집단별로 사용처를 나누어 비교하였음
- 경영형태별로는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자녀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는데, 특히 의료·복지(의약품 구입, 병원 진료비 등)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표 3-18] 경영형태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구분	단독경영	공동경영
농자재 구입 등 (종자비료, 농기구, 농기계 등)	30.7%	27.7%
생활용품 구입 등 (생활용품, 생활자재 등)	27.1%	26.9%
식재료 구입과 식사 등 (식재료 구입, 외식, 배달 등)	24.1%	21.0%
자녀 교육 등 (수강료, 교육물품 등)	7.5%	8.4%
문화·여가활동 등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등)	3.5%	4.2%
의료·복지 등 (의약품 구입, 병원 진료비 등)	6.5%	10.1%

주 : 결측치 제외, 응답자 138명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자재 구입은 50~60대와 30대가 높고, 생활용품 구입은 20대 이하~40대, 식재료 구입과 식사는 30대와 70대 이상, 자녀교육은 40~50대, 문화·여가활동은 20대와 40대, 의료·복지는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표 3-19] 연령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농자재 구입	27.5%	31.7%	29.8%	33.7%	34.2%	21.3%
생활용품 구입	27.5%	28.3%	28.6%	25.3%	26.3%	25.5%
식재료·식사	22.5%	28.3%	22.6%	21.7%	21.1%	27.7%
자녀 교육	7.5%	5.0%	8.3%	9.6%	5.3%	6.4%
문화·여가활동	7.5%	1.7%	4.8%	3.6%	0.0%	2.1%
의료·복지	5.0%	5.0%	6.0%	4.8%	13.2%	14.9%

주 : 결측치 제외, 응답자 138명

- 농가소득별로 살펴보면, 농자재 구입과 생활용품 구입은 2천만원 이상, 식재료 구입과 식사는 2천만원 이하, 자녀교육은 5천만원 이상, 문화·여가활동은 2천만원 이하, 의료·

복지는 1천만원 이하 소득구간 집단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음

[표 3-20] 농가소득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2천만원	2천~3천만원	3천~4천만원	4천~5천만원	5천만원 이상
농자재 구입	25.7%	28.2%	33.3%	32.7%	30.8%	30.0%
생활용품 구입	24.3%	25.6%	28.9%	28.8%	33.3%	24.4%
식재료·식사	24.3%	25.6%	22.2%	23.1%	20.5%	24.4%
자녀 교육	7.1%	7.7%	6.7%	7.7%	5.1%	10.0%
문화·여가활동	5.7%	5.1%	2.2%	0.0%	2.6%	3.3%
의료·복지	10.0%	7.7%	6.7%	7.7%	7.7%	6.7%

주 : 결측치 제외, 응답자 138명

- 이상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출조사를 종합하면, 지원금은 ‘영농활동+생활재+식료품’ 구입 등에 85.1%, 교육·의료·복지에 11.8%, 문화·여가에 1.9%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부부 공동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집단보다 의료·복지의 지출이 높은 점이 특징임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제2장의 정책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농정의 혁신모델로서 의미를 갖지만, TF 논의와 사업지침 확정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시·군 등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음
-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은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수준 등에 대한 이견이 가장 도드라졌는데, 이후 농민단체의 주민청원 입법조례로 이어졌고, 농업·농촌 현장에서는 사업신청 등의 절차, 이행조건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개선 의견이 제출되어 왔음
- 이 연구에서는 사업추진의 맥락과 배경,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TF 등)’에 제출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선과제로 구조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대

상자인 농업인의 의견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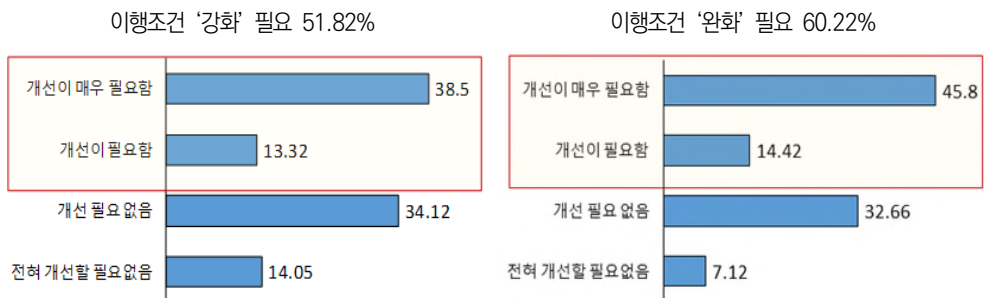
가. '이행조건 강화 또는 완화'에 대한 의견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필수 이행조건으로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을 정하고 있으며, 자율 이행조건으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이행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행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1.82%인데 비해, '이행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0.22%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표 3-21] '이행조건'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이행조건을 '강화'	14.05%	34.12%	13.32%	38.50%
이행조건을 '완화'	7.12%	32.66%	14.42%	45.80%

주 : 11점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1-전혀 필요없음 ~ 4-매우 필요함)



[그림 3-13] '이행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 '이행조건 강화'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의견은 14.05%이며, '이행조건 완화'에 대한 '적극 반대'하는 의견은 7.12%로 나타났음
-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완화-강화'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각각의 적극 반대 의견이 완화가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완화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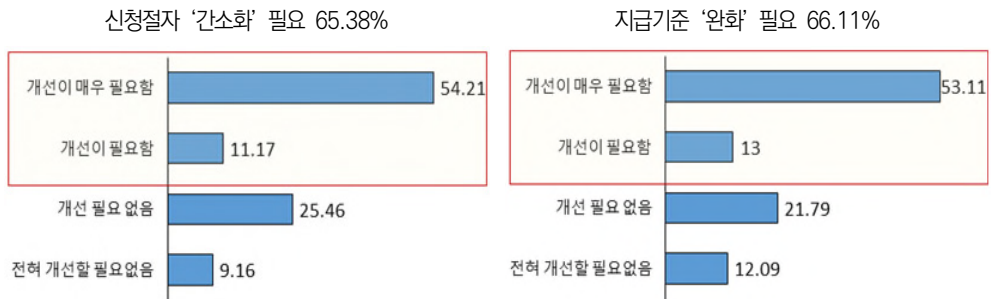
- 농어민 공익수당은 2월~4월 '농가가 이·통장에게 신청하고, 이·통장은 읍·면·동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4월~5월 읍·면·동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산입력을 하면, 7월~8월 시·군이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전라북도에 제출하면 전북도가 확정하여 예산을 시·군으로 교부하고, 9월에 지급하는 구조임
- 농가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원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심사표, 경작사실 확인서, 지원금 지급 동의서' 등으로 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정책현황을 참조)
- 이러한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것에 대해 농업인의 65.38%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자는 시행지침에 '보조금 신청 년도 전전년(前前年)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의 지급 제외 대상자로는 '필수 이행조건(2가지)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보조금 부정 수급자(제한기간 등), 농지 등의 불법행위, 불법소각 등에 따른 행정처분자'를 포함하고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완화'할 것에 대해 66.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종합소득금액 상한과 세대 분리자 등의 기준 완화가 그동안 제출된 의견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지급 대상자의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⁷⁾

[표 3-22]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신청 서류와 절차 간소화	9.16%	25.46%	11.17%	54.21%
지급제외 기준 완화	12.09%	21.79%	13.00%	53.11%

주 : 11점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1-전혀 필요없음 ~ 4-매우 필요함)

27) 종합소득금액 상한은 정부 공익직불제 기준으로 변경 시 정책별 차이에 따른 혼란은 있을 수 있음



[그림 3-14]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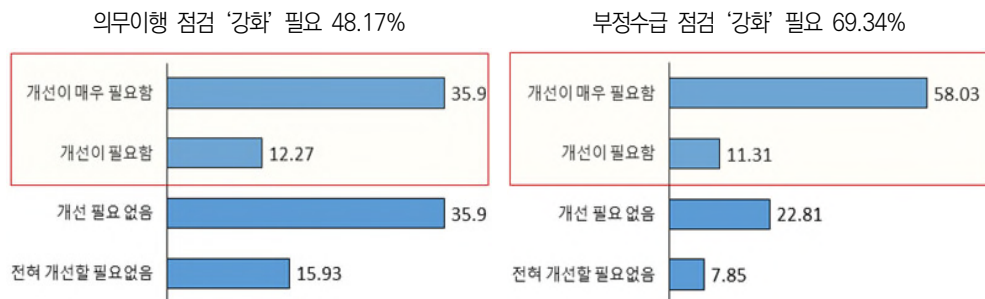
다.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의무 이행조건(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절한 사용)과 자율 실천조건(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의 검증은 9월~11월 진행되며, 이 밖에 기본의무의 준수 이행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음
- '의무이행 조건 지도 및 점검 강화'에 대해 48.17%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83%로 나타남
- 의무이행 조건 준수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의 이행을 강제할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지만,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촌마을 공동체(수준)에서의 자율적 실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마을 단위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적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부정수급 점검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69.3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음

[표 3-23]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의무이행 점검 강화	15.93%	35.90%	12.27%	35.90%
부정수급 점검 강화	7.85%	22.81%	11.31%	58.03%

주 : 11점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1-전혀 필요없음 ~ 4-매우 필요함)



[그림 3-15]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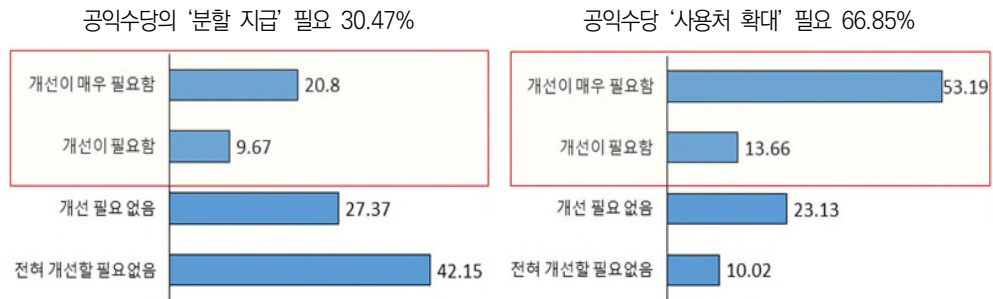
라.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 신청-확인-결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시·군은 9월 지역별 지역화폐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일괄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자 본인이 시·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식임 (지역별 차이가 있음)
- 이렇게 연 1회 금융기관을 통해 1회 지급되는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을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방안에 대해 30.47%만 찬성하였고, 응답자의 대부분(69.52%)은 현행과 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시·군별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상가, 점포,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사용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농업인의 66.85%가 찬성하고 있음

[표 3-24]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몇회 분할지급	42.15%	27.37%	9.67%	20.80%
사용처의 확대	10.02%	23.13%	13.66%	53.19%

주 : 11점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1-전혀 필요없음 ~ 4-매우 필요함)



[그림 3-16]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마.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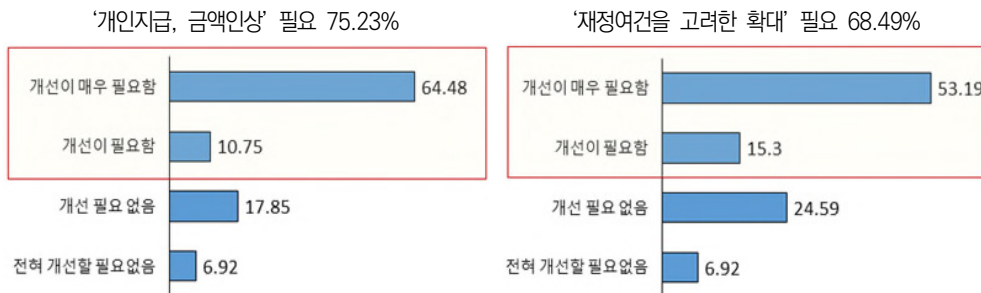
- 농가 단위로 연간 60만원(지역화폐)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경영체(농업인)로 확대하고, 현행 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왔고, 농민단체가 주민청원 조례(안)을 제출(2회)하는 등 쟁점 사안이 되었음
- '지급 대상을 농업경영체(농업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5.23%가 동의하고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시·군이 정책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으로 재정분담(40:60)하여 지급되는데, 정책추진 단계에서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쟁점이 되어 지자체 간의 일정한 설득과 협의 과정이 이뤄진 바 있음
- 지급대상의 확대와 지원금 상향은 곧 지자체(전라북도+시·군)의 재정부담 개편이 필요한 바, 전북도의회에서 주민청원 조례가 폐기된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함
-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상향에 동의하지만, 추가 재정 소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물은 결과 68.49%가 재정여건 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급대상 확대+지원금 인상'에 75.23%가 동의하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추진이 필

요하다는 의견도 68.49%인 점을 보면, 요구 수준과 재정 현실이 적절하게 고려된 지원사업의 개선 추진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함

[표 3-25]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개인지급, 금액확대	6.92%	17.85%	10.75%	64.48%
재정여건 고려 추진	6.92%	24.59%	15.30%	53.19%

주 : 11점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1-전혀 필요없음 ~ 4-매우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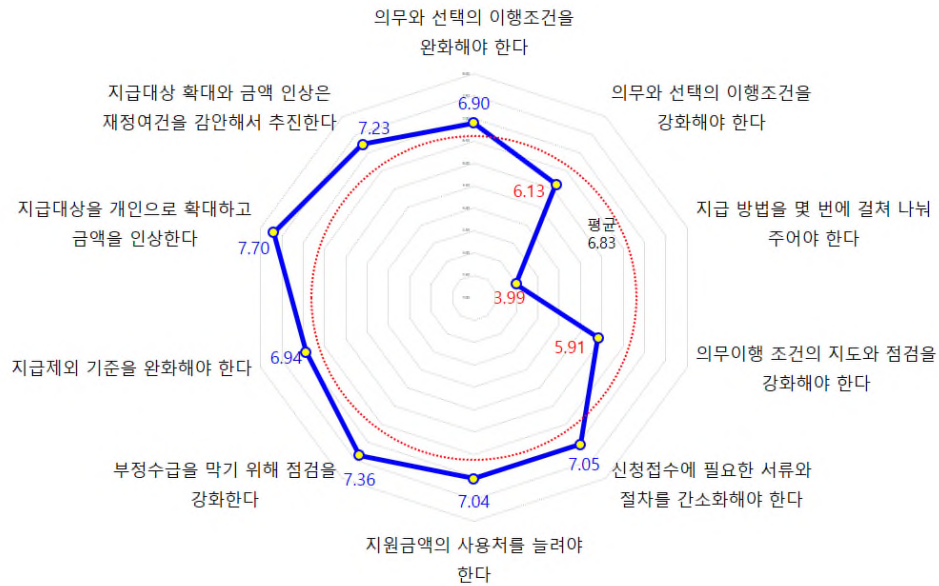


[그림 3-17]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바. 개선과제 의견 종합

- 이상과 같이 살펴본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 과제(10개)는 동의 여부의 비율로 파악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11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개선과제 의견을 비교하여 종합하고자 함
- 10개 개선과제에 대해 찬동하는 수준은 평균은 6.83으로 나타났는데, 제시된 개선과제에 상당한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제시한 10개 개선과제 중 '개인으로 지급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7.70), 부정수급 점검 강화(7.36), 재정여건에 맞춰 지급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7.23), 신청접수 절차 간소화(7.05), 지원금 사용처 확대(7.04), 지급제외 기준 완화(6.94), 의무·선택 이행조건 완화(6.90)'가 평균 이상(6.83)의 과제로 확인됨
- 제시한 개선과제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는 '의무·선택 이행조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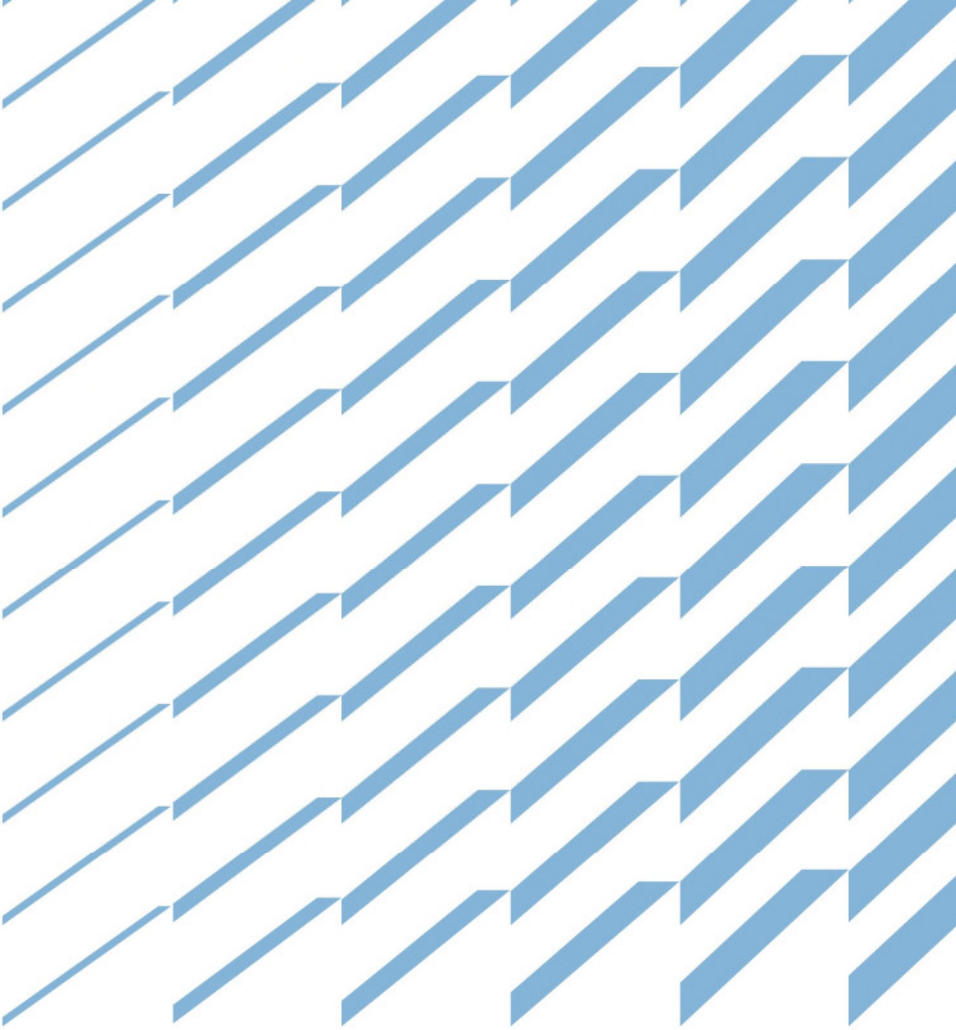
화(6.13), 의무 이행조건 지도·점검 강화(5.91), 분할 지급(3.99)’으로 나타남



[그림 3-18]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의견 종합

[표 3-26]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평가

개선과제	평균	std
의무와 선택의 이행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6.90	3.91
의무와 선택의 이행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6.13	3.06
지급 방법을 몇 번에 걸쳐 나눠 주어야 한다	3.99	3.38
의무이행 조건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5.91	3.10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7.05	3.00
지원금액의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	7.04	2.90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7.36	2.82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6.94	3.03
지급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한다	7.70	2.69
지급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한다	7.23	2.59
전체	6.83	3.14



제4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효과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진단
2.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4. 사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 4 장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효과

- 이 장에서는 전라북도(지자체)의 신규 시책 시행 초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태도)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논의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정책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농업인은 어떠한 수준에서 체감하고 있으며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논의하고자 함
-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담당하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가경제, 공익적 기능과 농촌활력 등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책 대상자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함
 - 정책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이 체감하면서 갖는 태도 등에 관한 9가지 세부 기대효과를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하고자 함
- 둘째,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지원의 체감효과와 효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 대상자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변수를 설명한 후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대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재정 지출된 지원금(지역화폐)이 지역경제 수준에서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화폐 파급효과와 현금 지급의 파급효과를 분석·비교하여 정책수단의 집행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진단

가. 사업지원 기대효과의 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정책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영농활동, 친환경 농업’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는 사회적인 공익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농촌마을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도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파생효과로 정할 수 있음²⁸⁾
- 이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이 체감하고 있고, 본인의 향후 활동 태도 등에 관해 9가지로 정하고, 이를 제시하여 동의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²⁹⁾하여 정책효과 분석의 근거로 삼고자 함
 - 농업인 본인이 직접 체감하는 기대효과는 ‘생산활동 도움, 영농활동 도움, 농가경제 도움’이 해당함
 - 지역적·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기대효과는 ‘농촌마을 활력, 공익 기능 유지, 농업인 자존감 향상’임
 - 개인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비료·농약 절감 태도,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태도, 영농규모 확대 태도’임

[표 4-1]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주요내용

구분	기대효과에 대한 제시문	비고
(농업경영 기여)	① 나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	체감
(농가경제 기여)	② 나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체감
(생산활동 지속)	③ 나의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체감
(마을활력 기여)	④ 내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체감
(공익기능 유지)	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체감
(자존의식 향상)	⑥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체감
(비료농약 감축)	⑦ 나는 비료와 농약 등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	태도
(영농규모 확대)	⑧ 나는 현재보다 영농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태도
(공동체의 참여)	⑨ 나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할 것이다.	태도

28)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TF’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목적에 근거해 이러한 내용이 기대되는 효과로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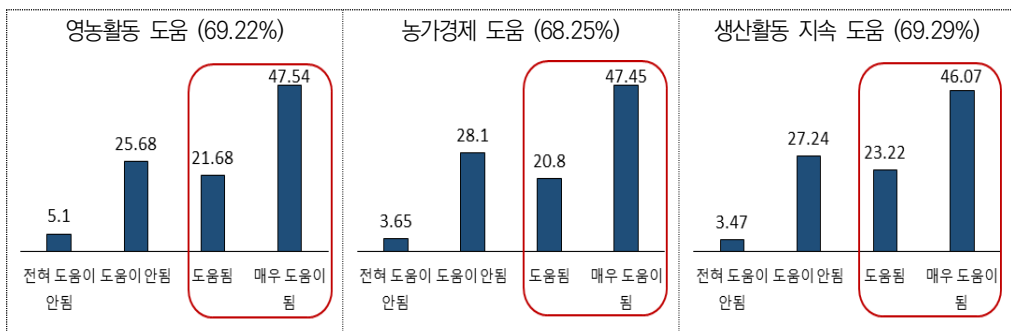
29) 11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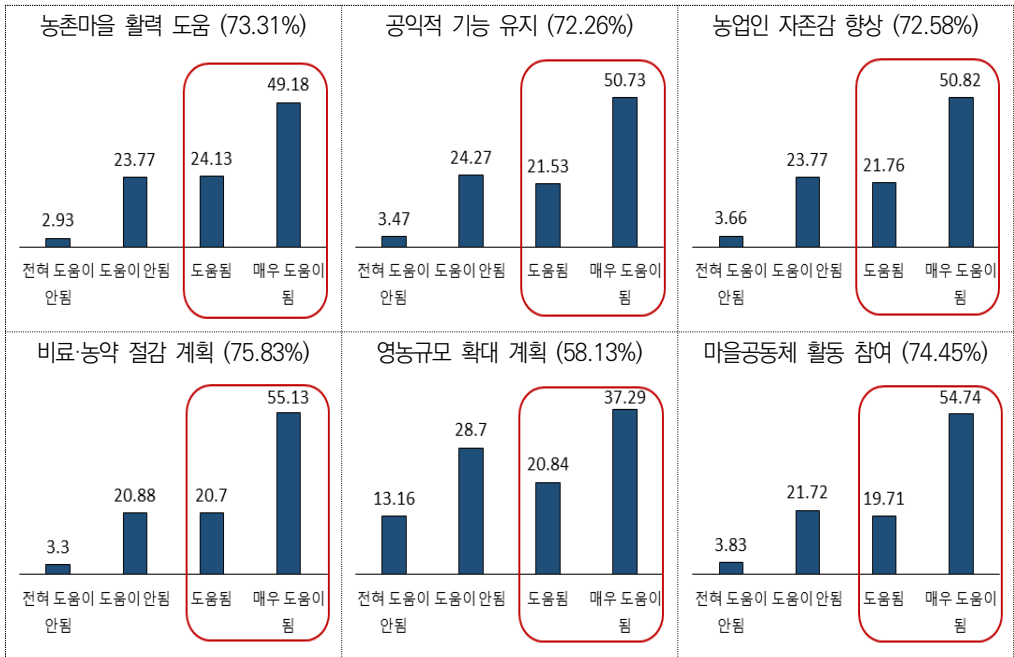
나. 사업자원의 기대효과 진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기대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70.37%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1점 리커트척도를 4점 척도(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 됨, 매우 도움됨)로 변환하여 분석
- 기대효과 세부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얻은 내용은 '비료·농약의 사용을 줄임(75.83%), 마을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74.45%),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73.31%), 농업인 자존감에 도움(72.58%), 공익적 기능 유지 도움(72.26%)' 등으로 나타남
- '농업 생산활동 지속 도움(69.29%),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69.22%),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68.25%), 영농규모 확대할 계획(58.13%)' 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표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① 나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	5.10%	25.68%	21.68%	47.54%
② 나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3.65%	28.10%	20.80%	47.45%
③ 나의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3.47%	27.24%	23.22%	46.07%
④ 내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2.93%	23.77%	24.13%	49.18%
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3.47%	24.27%	21.53%	50.73%
⑥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3.66%	23.77%	21.76%	50.82%
⑦ 나는 비료와 농약 등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	3.30%	20.88%	20.70%	55.13%
⑧ 나는 현재보다 영농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13.16%	28.70%	20.84%	37.29%
⑨ 나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할 것이다.	3.83%	21.72%	19.71%	5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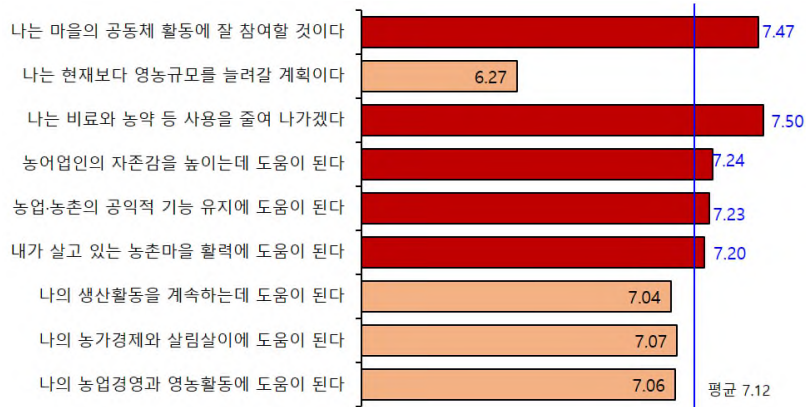
[그림 4-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종합)

- 평균값 이상의 기대효과는 ‘비료·농약 사용절감 계획(7.50),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계획(7.47), 농업인 자존감 향상 기여(7.24), 공익적 기능 유지(7.23), 농촌마을 활력 도움(7.20)’으로 나타남

[표 4-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구분	평균	std
① 나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	7.06	2.48
② 나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7.07	2.41
③ 나의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7.04	2.36
④ 내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7.20	2.29
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7.23	2.33
⑥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7.24	2.40
⑦ 나는 비료와 농약 등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	7.50	2.33
⑧ 나는 현재보다 영농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6.27	2.90
⑨ 나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할 것이다.	7.47	2.37
전체	7.12	2.46

- ‘영농규모 확대 계획(6.27), 농업 생산활동 지속 도움(7.04),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7.06),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7.07)’ 등은 평균값 이하의 기대효과로 평가되었음



[그림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다. 사업지원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인구특성, 준수사항 이행정도, 세부사업 이해정도·만족수준’에 따라 다르게 기대될 수 있으므로 집단별로 나누어 차이를 비교하였음

①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0대와 60대 이상이 40대~50대보다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농업인과 고령층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거주지’별로는 농촌마을 > 읍·면 소재지 > 시내(동지역) 순으로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나, 농촌 거주자에게 도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4]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38	3.84***	실거주지	농촌마을	8.34	8.49***
	30대	7.09			읍·면 소재지	7.39	
	40대	6.99			시내(동지역)	7.10	
	50대	6.31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3.77	33.92***
	60대	7.09			보통 수준	6.04	
	70대 이상	7.65			높은 수준	7.52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21	1.28	인지정도	잘 모르다	2.77	55.30***
	1천~2천만원	6.92			보통이다	6.06	
	2천~3천만원	6.62			잘 안다	7.71	
	3천~4천만원	7.15		만족정도	불만족	3.13	114.44***
	4천~5천만원	6.61			보 통	5.72	
	5천만원 이상	7.28			만 족	8.01	
경영형태	단독경영	6.95	-1.2				
	공동경영	7.23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②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0대와 60대 이상이 40대~50대보다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농업인과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거주지별로는 농촌마을 > 읍·면 소재지 > 시내(동지역) 순으로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커서 농촌지역 거주자에 도움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됨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5]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38	3.38***	실거주지	농촌마을	8.21	6.61***
	30대	7.15			읍·면 소재지	7.31	
	40대	6.96			시내(동지역)	7.14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50대	6.37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3.58	36.61***
	60대	7.13			보통 수준	3.58	
	70대 이상	7.59			높은 수준	6.06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2	0.95	인지정도	잘 모른다	7.53	53.69***
	1천~2천만원	6.98			보통이다	6.19	
	2천~3천만원	6.71			잘 안다	7.66	
	3천~4천만원	7.15		만족정도	불만족	2.95	114.20***
	4천~5천만원	6.69			보 통	5.82	
	5천만원 이상	7.26			만 족	7.97	
경영형태	단독경영	7	-0.67				
	공동경영	7.15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③ 농업생산 활동 지속 도움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30대~50대보다 농업생산 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농업인과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거주지’로는 농촌마을 > 읍·면 소재지 > 시내(동지역) 순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커서, 농촌지역 거주자에 도움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됨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 수록 농업생산 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6] ‘농업생산 활동 계속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26	3.09***	실거주지	농촌마을	8.21	6.71***
	30대	6.85			읍·면 소재지	7.32	
	40대	6.89			시내(동지역)	7.19	
	50대	6.41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4.15	28.02***
	60대	7.32			보통 수준	6.14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농가소득	70대 이상	7.47	1.31	인지정도	높은 수준	7.44	50.77***
	1천만원 이하	7.23			잘 모른다	3.00	
	1천~2천만원	7.00			보통이다	6.13	
	2천~3천만원	6.61			잘 안다	7.62	
	3천~4천만원	7.28		만족정도	불만족	3.13	108.45***
	4천~5천만원	6.65			보 통	5.84	
	5천만원 이상	7.14			만 족	7.90	
	경영형태	단독경영			6.95	-1.06	
공동경영		7.19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④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 도움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0대와 60대 이상이 40대~50대보다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 도움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농업인과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실제 거주지’별로는 농촌마을 > 읍·면 소재지 > 시내(동지역) 순으로 사는 농촌마을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커서, 농촌지역 거주자에 도움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됨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7]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54	2.33**	실거주지	농촌마을	8.30	4.78***
	30대	7.18			읍·면 소재지	7.51	
	40대	6.93			시내(동지역)	7.64	
	50대	6.70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4.00	36.18***
	60대	7.43			보통 수준	6.26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농가소득	70대 이상	7.54	1.18	인지정도	높은 수준	7.64	57.77***
	1천만원 이하	7.43			잘 모른다	3.08	
	1천~2천만원	7.02			보통이다	6.28	
	2천~3천만원	6.93		만족정도	잘 안다	7.81	128.98***
	3천~4천만원	7.46			불만족	3.13	
	4천~5천만원	6.76			보 통	6.00	
	5천만원 이상	7.26			만 족	8.10	
경영형태	단독경영	7.08	-1.88**				
	공동경영	7.48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도움

-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실 거주지’로는 농촌마을 거주 농업인이 읍·면 소재지와 시내(동지역) 거주자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높게 비교되었음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8]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움’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62	2.30**	실거주지	농촌마을	8.35	4.56**
	30대	7.40			읍·면 소재지	7.56	
	40대	7.07			시내(동지역)	7.81	
	50대	6.64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4.15	35.11***
	60대	7.44			보통 수준	6.24	
	70대 이상	7.46			높은 수준	7.68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49	1.63	인지정도	잘 모른다	3.00	61.83***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1천~2천만원	7.29			보통이다	6.24	125.91***
	2천~3천만원	6.71			잘 안다	7.87	
	3천~4천만원	7.47		만족정도	불만족	3.23	
	4천~5천만원	6.96			보 통	5.94	
	5천만원 이상	7.27			만 족	8.15	
경영형태	단독경영	7.09	-1.86**				
	공동경영	7.49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⑥ 농업인 자존감 향상 도움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0대와 60대~70대 이상이 40대~50대보다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실제 거주지’별로는 농촌마을 거주 농업인이 읍·면 소재지와 시내(동지역) 거주자보다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높게 비교되었음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9]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44	2.52**	실거주지	농촌마을	8.65	9.27***
	30대	7.24			읍·면 소재지	7.75	
	40대	7.00			시내(동지역)	7.49	
	50대	6.67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4.31	17.19***
	60대	7.60			보통 수준	6.70	
	70대 이상	7.55			높은 수준	7.53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43	1.62	인지정도	잘 모른다	3.23	41.75***
	1천~2천만원	7.51			보통이다	6.46	
	2천~3천만원	6.67			잘 안다	7.78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3천~4천만원	7.43		만족정도	불만족	3.17	101.75***
	4천~5천만원	7.00			보 통	6.12	
	5천만원 이상	7.26			만 족	8.09	
경영형태	단독경영	7.05	-2.66***				
	공동경영	7.65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⑦ 비료·농약 감축 의향

-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의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겠다는 의향을 갖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10] ‘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 의향’ 기대효과와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62	1.12	실거주지	농촌마을	8.33	1.44
	30대	7.68			읍·면 소재지	7.96	
	40대	7.62			시내(동지역)	8.38	
	50대	7.10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4.08	56.51***
	60대	7.74			보통 수준	6.19	
	70대 이상	7.4			높은 수준	8.07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13	1.79	인지정도	잘 모른다	3.17	81.51***
	1천~2천만원	7.33			보통이다	6.28	
	2천~3천만원	7.49			잘 안다	8.24	
	3천~4천만원	7.92		만족정도	불만족	3.18	114.00***
	4천~5천만원	7.02			보 통	6.39	
	5천만원 이상	7.71			만 족	8.34	
경영형태	단독경영	7.34	-2.15**				
	공동경영	7.80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⑧ 영농규모 확대 계획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20대 이하~40대) 영농규모 확대 계획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농가소득별’로는 5천만원 이상이 다른 소득구간의 농업인보다,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영농규모 확대 계획의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영농규모 확대 계획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음

[표 4-11] ‘영농규모 확대 계획’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90	14.86***	실거주지	농촌마을	7.12	0.03
	30대	7.29			읍·면 소재지	7.07	
	40대	7.17			시내(동지역)	7.16	
	50대	6.32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3.38	20.83***
	60대	6.08			보통 수준	5.30	
	70대 이상	4.68			높은 수준	6.73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5.74	5.54***	인지정도	잘 모른다	3.31	35.57***
	1천~2천만원	5.31			보통이다	5.09	
	2천~3천만원	6.01			잘 안다	6.96	
	3천~4천만원	6.55		만족정도	불만족	3.48	37.22***
	4천~5천만원	6.38			보 통	5.23	
	5천만원 이상	7.31			만 족	6.99	
경영형태	단독경영	6.13	-1.46*				
	공동경영	6.53					

주 : *p < 0.05. **p < 0.01. ***p < 0.001.

⑨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

- ‘경영형태별’로는 부부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의 기대가 크게 평가되었음
- ‘실제 거주지’별로는 농촌마을 거주 농업인이 읍·면 소재지와 시내(동지역) 거주자보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태도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사업 세부내용의 ‘인지정도와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의 기대가 크게 나타났음

[표 4-12]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계획’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 (t-test, ANOVA)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항목	세부항목	평균	T/F
연령	20대 이하	7.62	0.66	실거주지	농촌마을	8.30	3.36**
	30대	7.53			읍·면 소재지	7.61	
	40대	7.43			시내(동지역)	7.96	
	50대	7.2		준수사항 이행수준	낮은 수준	3.77	56.56***
	60대	7.74			보통 수준	6.22	
	70대 이상	7.41			높은 수준	8.04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7.29	1.87	인지정도	잘 모른다	3.46	85.70***
	1천~2천만원	6.94			보통이다	6.16	
	2천~3천만원	7.57			잘 안다	8.26	
	3천~4천만원	7.55		만족정도	불만족	3.61	117.89***
	4천~5천만원	6.82			보 통	6.20	
	5천만원 이상	7.79			만 족	8.39	
경영형태	단독경영	7.38	-1.32*				
	공동경영	7.67					

주 : *p < 0.05. **p < 0.01. ***p < 0.001.

라. 사업지원 기대효과 진단결과 논의

- ‘연령별’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따른 9개의 기대효과 중 8개(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제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20대~30대(젊은층)’과 60대 이상(고령층)’이 ‘40~50대(중년층)’보다 ‘영농활동, 농가경제, 농촌마을 활력, 공익기능 유지, 농업인 자존감, 비료·농약사용 줄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별’로는 ‘영농규모 확대’의 기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농가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형태(단독·공동)별’로는 ‘농촌마을 활력, 공익기능 유지, 농업인 자존감, 비료·농약 절감, 마을공동체 참여’ 등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공동경영이 단독경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거주지별’로는 9개의 모든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농촌마을 > 읍·면 소재지 > 시내(동) 거주자 순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지원사업의 ‘인지도 수준별’로는 9개의 모든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잘 알고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의 ‘만족도 수준별’로는 9개의 모든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의 ‘준수사항 이행수준별’로는 9개의 모든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준수사항 이행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2.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앞서 살펴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업인의 현상적인 기대태도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공익수당에 대한 ‘기대태도’는 정책 대상자인 농가의 특성과 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는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지원의 체감효과와 효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논의(사회복지 영

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기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①설명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②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변수를 설명한 후, ③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대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태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설명변수)’를 정하여 다루었음
- ‘정책 대상자의 특성(성별, 연령, 경영형태)’과 ‘정책 수혜자의 태도(사업내용 만족, 조건이행, 확대요구 등)’³⁰⁾에 따라 주관적인 ‘기대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음
- 이러한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수혜자인 농어민의 ‘특성 변수’들이 정책지원의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분석의 목적이 있음
- 분석결과에 따라 의미 있는 변수들을 특정하여 가설을 추가하였고, 별도의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인과 관계성을 추가로 검토함

가. 분석설계

① 기대태도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검토’

- 영향요인(설명변수)으로 가정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우선 검토하였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의 파급효과를 소거한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추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사용³¹⁾

30)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항목 중 기대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설명변수로 활용

31) 일반적으로 Pearson 상관계수는 정규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Shapiro-Wilk test로 검정을 수행함. 검정결과 분석대상이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됨(일부 변수(성별, 경영형태)만 p-value가 0.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채택). 이에 따라 비모수적 방법인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 ‘기대태도’에 대해 ‘연령, 사업내용 인지정도, 사업내용 만족정도, 준수사항 이행수준, 영농 활동 실천의지, 공익수당 확대요구’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 관련 변수별 스피어만 상관계수 분석결과

	기대태도	성별	연령	경영형태	정책목표 만족정도	이행조건 만족정도	지급대상 만족정도	지급수준 만족정도	지급방법 만족정도	준수사항1 이행수준	준수사항2 이행수준	준수사항3 이행수준	지원단가 인상요구	지급대상 확대요구	지출처 확대요구
기대태도	1.00														
성별	-0.01 (0.87)	1.00													
연령	0.08 (0.05)	0.04 (0.31)	1.00												
경영형태	0.05 (0.23)	0.10 (0.02)	-0.08 (0.09)	1.00											
정책목표 만족정도	0.60 (0.00)	-0.11 (0.01)	-0.05 (0.21)	0.00 (0.95)	1.00										
이행조건 만족정도	0.61 (0.00)	-0.10 (0.02)	-0.05 (0.23)	0.01 (0.74)	0.86 (0.00)	1.00									
지급대상 만족정도	0.56 (0.00)	-0.15 (0.00)	-0.04 (0.32)	0.07 (0.11)	0.73 (0.00)	0.81 (0.00)	1.00								
지급수준 만족정도	0.60 (0.00)	-0.08 (0.05)	0.01 (0.79)	0.02 (0.59)	0.62 (0.00)	0.66 (0.00)	0.65 (0.00)	1.00							
지급방법 만족정도	0.51 (0.00)	-0.06 (0.19)	0.03 (0.51)	-0.03 (0.45)	0.63 (0.00)	0.69 (0.00)	0.68 (0.00)	0.62 (0.00)	1.00						
준수사항1 이행수준	0.33 (0.00)	-0.08 (0.05)	-0.02 (0.58)	-0.02 (0.51)	0.51 (0.00)	0.49 (0.00)	0.46 (0.00)	0.24 (0.00)	0.46 (0.00)	1.00					
준수사항2 이행수준	0.33 (0.00)	-0.07 (0.11)	-0.01 (0.76)	-0.01 (0.79)	0.50 (0.00)	0.50 (0.00)	0.45 (0.00)	0.33 (0.00)	0.49 (0.00)	0.89 (0.00)	1.00				
준수사항3 이행수준	0.39 (0.00)	-0.07 (0.09)	0.01 (0.76)	-0.02 (0.71)	0.50 (0.00)	0.52 (0.00)	0.47 (0.00)	0.37 (0.00)	0.48 (0.00)	0.83 (0.00)	0.85 (0.00)	1.00			
지원단가 인상요구	0.43 (0.00)	-0.05 (0.28)	-0.02 (0.72)	-0.10 (0.03)	0.43 (0.00)	0.41 (0.00)	0.35 (0.00)	0.33 (0.00)	0.31 (0.00)	0.33 (0.00)	0.37 (0.00)	0.39 (0.00)	1.00		
지급대상 확대요구	0.41 (0.00)	-0.03 (0.54)	0.07 (0.12)	-0.05 (0.22)	0.41 (0.00)	0.43 (0.00)	0.44 (0.00)	0.44 (0.00)	0.40 (0.00)	0.30 (0.00)	0.34 (0.00)	0.33 (0.00)	0.41 (0.00)	1.00	
지출처 확대요구	0.42 (0.00)	-0.03 (0.43)	-0.04 (0.36)	-0.07 (0.13)	0.35 (0.00)	0.35 (0.00)	0.30 (0.00)	0.26 (0.00)	0.25 (0.00)	0.34 (0.00)	0.35 (0.00)	0.35 (0.00)	0.63 (0.00)	0.38 (0.00)	1.00

주 1. 계수가 1, -1 가까울수록 완전한 선형관계, 괄호()안 유의수준, 모집단의 상관계수인 rho 추정을 위한 상관계수 값
 2. 준수사항 1(논·밭 황성기능 유지), 준수사항 2(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사항 3(마을단위 환경보전 참여)
 3. 상관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짝별 삭제(pairwise deletion) 방식 이용

② 기대태도 요인 인과관계 ‘분석모형’ 설정

- ‘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음
- 설명변수는 앞선 상관계수 분석에 따라 기대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활용 하였음
- 한편, 이상의 다중회귀분석은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관

rank correlation)를 추정하였음. 변수 대부분이 구간형 데이터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로서 서열 이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적합함

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실천의지’도 중요한 결과이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추가함

[표 4-1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종속변수	설명변수
*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태도 (6개 변수 총합) • 영농활동에 도움 • 농가경제에 도움 • 생산활동 지속에 도움 • 농촌마을 활력증대에 기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 • 농어업인 자존감 향상 도움	* 성별, 연령, 경영형태 * 사업 세부내용별 만족정도, 준수사항 이행정도, 공익수당 확대요구 * 이외 외부변수들은 상수항에 포함된 것으로 제외(설명변수들의 영향력 검토 측면에 중점을 둠) * 분석방향 :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표 4-15]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실천의지’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종속변수	설명변수
* 공익적 가치 활동 실천의지 (3개 변수 총합) • 비료·농약 사용 절감 의지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 의지 • 논·밭의 형상 유지 의지(영농규모 확대)	* 성별, 연령, 경영형태 * 사업 세부내용별 만족정도, 준수사항 이행정도 *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효과의 기대태도 * 이외 외부변수들은 상수항에 포함된 것으로 제외(설명변수들의 영향력 검토 측면에 중점을 둠) * 분석방향 :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 인과관계 파악

- 일반적인 다중선형 회귀모형처럼 계수(coefficient)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 표준화된 β 계수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고, 비표준화된 계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함³²⁾
- 이러한 분석은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의 ‘기대태도’와 지원을 통한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임

나. 분석결과

32) 이 분석모형에 대한 사전검정으로 변수간 다중공선성 검토와 설명변수들의 이분산성, 잔차의 정규성 등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으며, 등분산성 및 잔차의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분석모형에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검정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가정(robust)하여 분석함. 이는 이분산성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어려워 최소제곱(ols) 방법으로 추정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해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하는 기법임(민인식 외, 2014)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6]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S.E.	표준화 계수 (β)	t(p)	Vif
인구 특성	성별	1.1967	0.8991	0.0450	1.33	1.06
	연령	0.0788	0.0288	0.0911	2.74**	1.03
	경영형태	2.6546	0.9416	0.0951	2.82**	1.06
정책 내용 만족도	정책목표	1.0713	0.3688	0.1897	2.90**	3.98
	이행조건	1.3177	0.4368	0.2240	3.02**	5.14
	지급대상	0.6042	0.3407	0.1055	1.77	3.30
	지급방법	0.8307	0.2546	0.1564	3.26***	2.14
준수 사항 이행도	논·밭의 형상유지	0.2288	0.4765	0.0385	0.48	6.00
	비료·농약 적정사용	-1.4939	0.5081	-0.2484	-2.94**	6.66
	마을단위 환경보전	0.7130	0.3774	0.1215	1.89	3.86
요구 사항	지원단가 인상	0.3617	0.2144	0.0727	1.69	1.73
	지급대상 확대	0.2203	0.1653	0.0507	1.33	1.35
	사용처 확대	0.8209	0.1781	0.1894	4.61***	1.58
cons_상수항		1.1035	3.1947		0.35	

주 1. Observation=478, F=38.27, (Prob > F)=0.0000, R2=0.5364, Root MSE=9.1829, 평균 VIF=2.99
 2. 지급수준의 만족도의 경우 질문의 의미상 지원단가 인상요구와 의미가 일맥상통하여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외시킴
 3. *p < 0.05. **p < 0.01. ***p < 0.001.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모델의 표준화 계수 (절대)값을 통해 살펴보면,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 이행조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정책목표 만족도, 사용처 확대 요구, 지급방법 만족도, 경영형태, 연령' 등의 순으로 분석됨
- 첫째,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 이행조건 만족도'가 '기대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행조건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익수당 지원의 3대 전제조건을 이행해야만 하는 현실적 의무(부담)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특히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는 표준화 계수 절대값이 높아 가장 큰 영향요인인데, '기대태도

도'에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이 현장에서 일정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의 전제조건(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마을 단위 환경보전)을 정책 대상자가 적극 수용하도록 프로그램(사전교육, 공동이행 등)을 마련하여 이행수준을 높이는 것이 '기대태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책목표 만족도, 지급방법 만족도, 사용처 확대 요구'가 '기대태도'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목적 이해, 실제 지급 방식 만족도와 사용처 확대가 기대태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촌유지를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대상자가 충분히 동의하고 만족하는 과정(교육연계, 신청과정 등)의 마련이 기대태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 지급방식 만족도가 높고 사용처 확대 요구가 클수록 기대태도가 높아진다는 점은 지역화폐 지급이 '현금'에 비해 사용제한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해시켜 기대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줌. 또한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용처 수요를 고려한 대책도 기대태도를 높이는 방안임을 알 수 있음
- 셋째, '경영형태와 연령'은 '기대태도'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공동경영과 고령자'에게 지원효과가 높게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이상의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기대태도'를 높이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중심으로 어떠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지를 논의한 것임
- 한편,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향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변수)별로 기대태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비표준화 계수값을 통해 기대태도와 요인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인구특성 변수인 '연령'과 '경영형태'와 '기대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이 높고 '공동경영'일수록 '기대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고령자'와 '부부 공동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생산 유지, 농가 경제 유지, 농업인 자존감 향상, 농촌마을 활력' 등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둘째, 사업 세부내용 '만족도' 변수(정책목표, 이행조건, 지급방법)와 '기대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사업의 세부 내용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대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시행목적, 지급방법, 이행조건' 등 정책의 세부내용에 만족할수록 '정책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인데, 정책의 세부내용을 대상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셋째, '준수사항' 변수(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마을단위 환경보전)와 '기대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는 '비료·농약 적정사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음(-)의 부호로 나타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준수사항 중 의무이행 조건인 '비료·농약'을 이미 적정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공익수당 지원의 '정책효과 기대태도'를 높이는 요인이 아닌 반면, 비료·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대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넷째, 공익수당 개선 '요구사항' 변수(지원단가 인상, 지급대상 확대, 사용처 확대)와 '기대태도'에 대한 인과관계는 '사용처 확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과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인상 요구가 높을수록 '기대태도'가 높다는 것은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적임에도 현재 상태도 도움이 되지만, 보다 많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중 '논·밭 형상유지', '마을단위 환경보전'과 요구사항 중 '지원단가 인상', '지급대상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대상자인 농업인의 '기대태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②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인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7]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S.E.	표준화 계수 (β)	t(p)	Vif
인구 특성	성별	-0.3767	0.4018	-0.0296	-0.94	1.07
	연령	-0.0839	0.0134	-0.2027	-6.24***	1.03
	경영형태	0.3892	0.4034	0.0291	0.96	1.05
정책 내용 만족 정도	정책목표	-0.2256	0.1891	-0.0832	-1.19	4.01
	이행조건	0.4338	0.2332	0.1535	1.86	5.23
	지급대상	0.4343	0.1681	0.1579	2.58**	3.31
	지급수준	-0.0827	0.1233	-0.0359	-0.67	2.32
	지급방법	0.0379	0.1628	0.0149	0.23	2.25
준수 이행 정도	논·밭의 형상유지	-0.4503	0.2240	-0.1580	-2.01*	6.34
	비료·농약 적정사용	1.0513	0.2479	0.3645	4.24***	6.57
	마을단위 환경보전	-0.0792	0.1749	-0.0281	-0.45	3.95
정책효과의 기대태도		0.2212	0.0257	0.4614	8.61***	1.95
cons_상수항		7.9115	1.4732		5.37	

- 주 1. ‘농어업 공익적 가치 활동’에 대한 실천의지=비료 및 농약 절감, 영농규모 확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
 2. Observation=481, F=59.32, (Prob > F)=0.0000, R2=0.5401, Root MSE=4.372, 평균 VIF=3.26
 3. 분석모형에서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가정(robust)하여 분석함
 4. *p < 0.05. **p < 0.01. ***p < 0.001.

-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모델의 표준화 계수 (절대)값을 통해 살펴보면, ‘정책효과의 기대태도’가 가장 높았고, ‘비료·농약 적정 사용 이행정도, 연령, 지급대상 만족도, 논·밭의 형상유지 이행정도’ 순으로 분석됨
- 첫째, ‘정책효과의 기대태도’가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받아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책 대상자가 많을수록 이행조건의 실천의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결과임
-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긍정적 기대효과를 갖게 하여 이행조건 실천의지로 적극 실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의무이행 조건을 강조하기보다 도움정도를 체감하도록 지원방식 유지가 필요함을 시사함

- 둘째,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가 이행조건 ‘실천의지’에 상당히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이행조건과 달리 비료·농약 적정사용은 농업인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실천의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인이 비료·농약을 줄이거나 적정하게 사용하여 환경부하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농림사업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이행조건의 실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논·밭 형상유지 이행정도’도 ‘실천의지’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만,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을 유지하기만 하면 논·밭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편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셋째, ‘연령’은 이행조건 ‘실천의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공익수당 지원의 이행조건은 농업인의 영농방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실천의지에 연령은 상당한 제약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넷째, ‘지급대상 만족도’도 ‘실천의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행조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재원의 제약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천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음
- 앞선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향요인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 요인(변수)별로 실천의지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비표준화 계수값을 통해 실천의지와 요인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봄
- 첫째, 인구특성 변수 중 ‘연령’만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실천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받고 ‘영농규모 확대, 마을의 공동체 활동 참여, 비료와 농약의 사용 감축’ 등의 실천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둘째, 정책 세부내용 ‘만족도’ 변수 중 ‘지급대상’만이 ‘실천의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농가단위 지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천의지’가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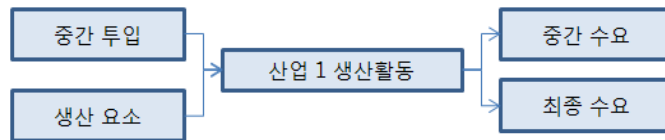
- 셋째, ‘준수사항’ 변수(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마을단위 환경보전)와 ‘실천의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논·밭 형상유지’와 ‘비료·농약 적정사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비료·농약 적정사용은 양(+)의 부호이지만 논·밭 형상유지는 음(-)의 부호임
 -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전제인 준수사항 중 의무이행 조건인 ‘비료·농약’을 적정 사용할수록 ‘실천의지’가 높지만, ‘논·밭의 형상 유지’는 영농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실천의지’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넷째,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기대태도’ 변수(영농활동·농가경제·생산지속·마을활력 도움, 농업인 자존감 향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와 ‘실천의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부호로 나타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실제 영농활동·농가경제·생산지속·마을활력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태도’가 높은 농업인이 비료·농약 사용 감축,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확대, 영농규모 확대 등의 ‘실천의지’가 높음을 나타냄

3. 사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파급효과 분석개요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는 현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업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정성적인 효과가 있고, 일시적인 소비 증가로 인해 관련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정량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정성적인 효과는 금액으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효과는 1인당 60만원씩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실제로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그 만큼의 지역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업 활동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107,134명에게 총 64,280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전액 소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중간재 투입 규모와 노동력 투입 규모를 계산하여 지역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측정함
- 107,134명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 중에서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표본을 통해 파악하고, 이 표본집단의 지출 비율이 모집단에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 증가량을 파악하고자 함
- 산업별 생산 증가량 발생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투입 산출 모형을 사용함



[그림 4-3] 투입 산출 모형 개요

- 투입 산출 모형은 특정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중간재와 관련한 전후방산업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여 누적 생산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임
-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경우에는 국가 단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며,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경우에도 국가 단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해당되는 지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포함하여 최종 결과가 제시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칫 기대효과를 과대 해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역 단위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국가 단위의 산업연관표에 비해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 2015년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표가 가장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산업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산되는 효과의 오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공제		
		산업1	산업2	산업3	중간수요계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	최종수요계	수입	관세	
중 간 투 입	산업1	20	15	55	90	20	0	10	5	35	10	0.5	114.5
	산업2	50	12	20	82	8	2	5	15	30	5	0.05	106.95
	산업3	10	40	10	60	20	10	30	10	70	15	1.5	113.5
	중간투입계	80	67	85	232	48	12	45	30	135	30	2.05	334.95
부 가 가 치	피용자보수	15	25	10	50								
	영업잉여	15.5	11.95	13.5	40.95								
	간접세	4	3	5	12								
	감가상각	0	0	0	0								
	부가가치계	34.5	39.95	28.5	102.95								
총투입		114.5	106.95	113.5	334.95								

[그림 4-4] 산업연관표 개요

- 산업연관표는 1년 동안 이루어진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정리 기록한 것이며 사회회계행렬 작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연관'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산업 간의 거래로 산업별로 총산출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얼마나 구입하여 중간재로 투입하였는가를 밝힘으로써 생산된 상품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연관표는 생산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로지 생산계정과 다른 계정들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냄
 - 소득기반 모형은 생산활동의 산출물은 전부 최종 수요(가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투입 산출 모형에서는 최종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중간 투입이 되는 중간 수요를 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입 산출 모형은 산업간 관계를 고려한 소득 기반 모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입 산출 모형의 장점은 기존 산업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서 단순 선형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단순성과 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임
 - 하지만 국내재와 수출재, 국내재와 수입재 등과 같이 경제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격과 수량조

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환류효과(feedback effects)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들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

- 투입산출모형은 총투입과 총산출이 서로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두 가지의 균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
- 첫 번째 균형 방정식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식으로 투입 산출표의 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산업의 총공급은 생산량과 수입의 합이 되며, 총수요는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의 합임
 - 중간 수요는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 투입량의 총합으로 계산됨

$$X_i + M_i = \sum_j ID_{ij} + F_i$$

X : 산업 생산량 M : 수입 ID : 중간 투입 F : 최종 수요

- 두 번째 균형 방정식은 산업의 총생산이 총투입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식으로 투입 산출표의 열로부터 얻을 수 있음
 - 산업의 총투입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간 투입의 총합과 부가가치(노동, 자본)의 합이 됨

$$X_j = \sum_i ID_{ij} + VA_j$$

VA : 부가가치

- 투입 산출 모형은 중간 투입의 규모는 총생산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보고 그 비율을 투입산출계수라고 하여 $ID_{ij} = a_{ij}X_i$ 로 계산할 수 있음. 만약 n 개의 산업이 존재한다면, 이 식은 $n \times n$ 행렬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X + M &= AX + F \\ (I - A)X &= F - M = VA \\ X &= (I - A)^{-1}VA \end{aligned}$$

- 위 식을 통해 i 산업의 최종 수요의 변화에 따른 모든 산업의 총생산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설명은 국가를 한 지역으로 설정한 상황에서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으며, 지역 차원에서의 분석은 다지역 혹은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함
- 국가를 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은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의 활동이라고 파악하여 지자체간의 교역은 크게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고 국가간 수출입만 외생변수로 고려하게 됨
-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타 지역 간의 수출입 규모 역시 지역 경제 효과를 내재화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정책의 고려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투입산출모형에서 타 지역 간의 교역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야 하며,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내재화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함

나. 파급효과 분석과정

- 투입 산출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느 항목으로 지출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당 내에서의 지출 비율을 간접적으로 파악함

[표 4-18] 농어민 공익수당 지출 항목별 해당되는 산업 분류

설문조사 상 지출항목	(적용)	한국 표준산업분류	표본집단 지출 비율
농자재 구입	→	기타 제조업 제품	42.4%
생활용품 구입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0.9%
식재료 구입 및 외식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1.8%
자녀 교육	→	교육서비스	6.3%
문화 여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9%
의료 복지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5%
기타	→	기타 서비스	1.2%

- 설문조사에서 지출 항목은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지출 규모를 물어봤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농자재 구입, 생활용품 구입, 식재료 구입 및 외식, 자녀 교육, 문화·여가, 의료·복지, 기타
-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농자재 구입으로 전체 금액의 42.4%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식재료 구입 및 외식이 21.8%, 생활용품 구입이 20.9% 등의 순임
- 설문조사 상의 지출 항목별로 전체 지출 금액을 계산한 이후, 투입산출모형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대분류)에 맞춰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투입산출모형에서 사용되는 산업 분류는 대분류 기준으로 33개이며, 설문조사 상의 지출 항목을 산업과 매칭시키는 작업을 거침
- 특정 물품을 구입하는 활동은 실제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자재 구입, 생활용품 구입과 식재료 구입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직거래 가능성, 지역 내 유통구조, 지역 산업 특화 정도를 감안하여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산업군에 매칭함

[표 4-19] 투입산출모형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대분류)		
1. 농림수산물	12. 전기장비	23.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 광산물	13. 기계 및 장비	2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부동산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27. 사업지원서비스
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전력, 가스 및 증기	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 화학제품	18.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29. 교육서비스
8. 비금속광물제품	19. 건설	3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9. 1차 금속제품	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0. 금속가공제품	21. 운송서비스	32. 기타 서비스
1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3. 기타

- 농자재 구입은 종자나 농기계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점에 따라 도소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농기계를 임대 혹은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타 제조업 제품으로 분류함

- 생활용품 구입은 농자재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 생산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상품 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로 분류함
- 식재료 구입 및 외식은 외식의 경우에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해당되고 식재료 구입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계산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로 분류함
- 위 3개 항목은 분류 상에 쟁점이 되는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은 분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항목들로 자녀 교육은 교육서비스로, 문화 여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로, 의료 복지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기타는 기타 서비스로 분류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른 정책 유형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 지역의 제한이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SOC 구축 및 공공사업을 할 경우’의 효과와 비교해 보고자 함
-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유롭게 소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지역 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내재화되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지급된 수당 100%를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타 지역에서 소비할 경우와 저축 등을 통해 자산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는 더 줄어들 것임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에서 전라북도 도민은 소득의 81%를 소비활동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소득의 44%는 지역 내 소비활동으로 지출하고 있음

[표 4-20]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 및 지출 규모 (2015년 산업연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라북도 총 소득	전라북도 총 소비	도내 소비	도외 소비
금액	33,110,259	26,952,429	14,713,005	12,239,424
소득 대비 비중	100.0	81.4	44.4	37.0

- 즉, 만약 농업인들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20%는 자산화할 것이며, 나머지 80%의 절반가량은 지역 내 소비, 나머지 절반은 타 지역에서의 소비로 지출할 것임
- 따라서 107,134명에게 총 64,280백만원의 현금을 소비지역 및 소비기간의 제한³³⁾ 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81.4%만 실제 지출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지급 금액의 44.5%는 전라북도 내에서, 37.0%는 타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이 외에 동일한 예산으로 도로 및 시설 건립과 같은 SOC 사업 즉 건설업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경우와, 공공 행정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력을 높일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고자 함

[표 4-21] 사업 유형별 투입산출모형 계산 과정

구분		투입 범위	투입 규모
농어민 공익 수당	지역화폐지급	설문조사에서 지출 항목별 지출비율 적용	64,280백만원이 지역 내 소비
	현금 지급	산업연관표 상에서 전북 도민의 산업별 지역별 지출 항목	도내 소비 : 28,564백만원 도외 소비 : 23,762백만원
SOC 사업*		산업연관표 상에서 건설업으로 투입	64,280백만원이 해당산업 투입
공공행정**		산업연관표 상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으로 투입	64,280백만원이 해당산업 투입

* : 도로 및 건물 건립 사업

** : 공무원 추가 고용 및 행정서비스 확대 사업

- 4가지 시나리오별로 투입산출 모형에 적용하는 과정은 위 <표 4-21>과 같이 이루어짐
- 첫째,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100% 지역 내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출 비율을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지역 내 산업으로 투입되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 둘째, 농어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44.4%는 지역 내 소비, 37.0%는 지역 외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산업연관표 상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지역별, 산업별 소비 비율을 적용하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산업으로 투입되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33)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100% 소비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비 지역과 기간을 강제할 수 없음

- 셋째, SOC 사업은 농민수당 예산 규모만큼 지역 건설업에 투입되었다고 가정하였으며, 공공행정 사업은 지역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으로 투입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함

다. 파급효과 분석결과

- 첫째, 107,134명에게 총 64,280백만원이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계산됨
- 전라북도 내에서만 발생한 효과 기준으로 볼 때,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출 활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 산업 생산은 841.1억원이 증가하였고, 부가가치는 339.9억원 증가, 고용은 989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4-2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전라북도 내 (a)			전라북도 외 (b)			전국 (a+b)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파급효과	841.1	339.9	989	392.2	154.6	243	1,233.3	494.5	1,232

- 효과의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 미친 영향은 392.2억원의 생산, 154.6억원의 부가가치, 243명의 고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남
- 효과는 전라북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타 지역의 중간재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따라서 전국적으로 1,233.3억원의 생산과 494.5억원의 부가가치, 1,232명의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경제적 효과의 규모 및 내재화 정도에서 확실히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더 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더 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화폐 지급 효과의 내재화율³⁴⁾은 생산 68.2%, 부가가치 68.7%, 고용 80.3% 수준인 반면, 현금 지급 효과의 내재화율은 생산 44.3%, 부가가치 47.7%, 고용 56.4%로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이 더 효율적임

[표 4-23]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단위 : 억원, 명)

구분	전라북도 내(a)			전라북도 외(b)			전국(a+b)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지역화폐 지급	841.1	339.9	989	392.2	154.6	243	1,233.3	494.5	1,232
(내재화율)	68.2%	68.7%	80.3%						
현금 지급 시	371.2	186.6	402	466.6	204.5	311	837.8	391.1	713
(내재화율)	44.3%	47.7%	56.4%						

- 셋째, 동일한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용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정책이 동일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SOC나 공공행정사업에 비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생산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로 및 건물 건립과 같은 SOC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 측면에서 타 지역으로 효과가 유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편임
-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의 경우에는 산업 생산 효과는 다른 유형의 사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농민공익수당에 비해 낮지만,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율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낮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낮다고 볼 수 있음

34) 전라북도 내 효과 / 전국 효과 비율

[표 4-24]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단위 : 억원, 명)

구분	전라북도 내			전국 (전북 포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농어민 공익수당	841.1	339.9	989	1,233.3	494.5	1,232
SOC*	813.7	352.7	648	1,287.6	529.3	875
공공행정**	703.6	567.3	772	814.3	614.8	842

* : 도로 및 건물 건립 사업

** : 공무원 추가 고용 및 행정서비스 확대 사업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서비스 산업의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일한 규모의 다른 유형의 정책과 비교할 때,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됨
- 지역 내 돈의 흐름을 유지시켜 서비스업의 고용 효과가 크며,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일자리 수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4. 종합논의 및 시사점

-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른 제출자료에 반영할 ‘정책효과’를 이러한 정책목적에 근거하여 파악 가능한 범위와 방법³⁵⁾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의 주관적 평가로 현재의 도움정도와 기대효과로 측정하고자 하였음
- 이 장에서 검토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는 시행 2년이 된 정책의 성

3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모하고자 한 정책목적의 세부내용은 각각의 목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평가·측정하여 정교한 정책효과 분석을 해나갈 과제가 있음

격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①‘정책대상(농업인)’이 체감하거나 예상하는 ‘기대효과’와 ②‘지역경제’ 수준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성과의 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탐색하고자 하였음

가. 공익수당 지원 ‘기대효과’ 평가, 종합논의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가경제 기여, 농업경영·생산활동 도움, 농업인 자존감 향상’ 등을 정책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다시 ‘농업경영 기여, 농가경제 기여, 생산활동 지속, 마을활력 기여, 공익기능 유지, 자존의식 향상, 비료농약 감축, 영농규모 확대, 공동체의 참여’ 등 9개 기대효과로 나누어 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효과의 수준을 평가하였음
- 첫째, 높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내용³⁶⁾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인 자존감 향상, 공익적 기능 유지, 농촌마을 활력’ 등으로, 지원사업이 밝히고 있는 사회적·지역적·공익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높음에 주목할 수 있음
- 반면 ‘농가경제·살림살이, 농업생산 활동, 농업경영·영농활동, 영농규모’ 등과 같이 현금성 지원(지역화폐)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영농활동과 농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효과 평가된 점이 특징적임
- 결국, 농업인 공익수당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농업인은 지원정책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회적·공익적 가치에 기여가 중요하며, 실제 그렇게 기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 한편으로는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한 쟁점(2장에서 다룸)에서와 같이 공익수당의 지원 수준이 농업인이 만족(체감)할 수준에서 농가경제에 도움이 아쉽다는 기대(평가)가 반영될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겠음
-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청년 농업인과

36) 9개 기대효과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평균 이상의 내용

고령 농업인'에서, '공동경영 농가'에서, '농촌마을 실제 거주자'에서 기대효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함

- 이는 지원수준(대상+금액)이 농업인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농 초기 또는 고령자 등과 같이 농업·농촌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의 효과를 체감(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에 따라 기대효과는 9개 항목 모두에 걸쳐 일관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당 지원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면 정책효과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의할 수 있겠음
-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알고 있는 수준(정도)'과 사업(내용)에 대해 '동의(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예상하는 정책의 기대효과를 체감하거나 파악하는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될수록 정책의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 또한 상승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농정의 신규 정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세부내용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구하는 프로그램(설명, 교육, 홍보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음³⁷⁾

나.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종합논의

-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업인이 체감하는 공익수당에 대한 '기대태도'는 정책 대상자인 농가의 특성과 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책 대상자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37) 이 연구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관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대효과는 '경영형태, 이해수준, 만족정도, 이행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어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 이행조건 만족도, 정책목표 만족도, 사용처 확대 요구, 지급방법 만족도, 경영형태, 연령'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이행조건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익수당 지원의 전제조건 이행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의무(부담)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행조건을 정책 대상자가 적극 수용하여 이행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겠음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목적의 이해, 실제 지급방식 만족도와 사용처 확대가 기대태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데, 지역화폐가 '현금'에 비해 사용제약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해시켜 기대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경영형태와 연령'은 '기대태도'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공동경영과 고령자'에게 지원효과가 높게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둘째,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향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인(변수) 별로 기대태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특징을 살펴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떠한 점에서 기대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하였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자'와 '부부 공동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에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인상 요구가 높을수록 '기대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의 '시행목적, 지급방법, 이행조건' 등 정책의 세부내용에 만족할수록 '정책효과'가 높아지는데, 정책 내용을 대상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준수사항 중 의무이행 조건인 '비료·농약'만 기대효과에 부(-)의 인과관계로 분석된 점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비료·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정책 지원의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인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모델로 분

석한 결과, ‘정책효과’의 기대태도, 비료·농약 적정사용 이행정도, 연령, 지급대상 만족도, 논·밭의 형상유지 이행정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받아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정책 대상자가 많을 수록 이행조건의 실천의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결과임
- 다른 이행조건과 달리 비료·농약 적정사용은 농업인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실천의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공익수당 지원의 이행조건은 농업인의 영농방식과 직결되는 것으로 실천의지에 연령은 상당한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공익수당 지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종합논의

- 이 연구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사용처를 중심으로 농업인 대상의 (표본)조사를 통해 사용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임
- 농어민 공익수당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 요인이며, (일시적인)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이와 관련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원된 지원금이 산업연관 구조에 따라 경제적·지역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특히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현금 지원과는 다른 지역경제 기여의 더 큰 효과가 기대되어 지원금의 지급형태에 따른 효과도 대별하여 살펴봄
- 아울러 정책 실행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일 예산으로 유사 공공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효과를 비교하는 ‘재정투자 효율성 논쟁’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첫째, 농업인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지출 구조는 농자재(42.45), 생활용품

(20.9%), 식재료·식사(21.8%), 자녀교육(6.3%), 문화·여가(1.9%), 의료·복지(5.5%) 등임

- 지출 구조를 통해 지원금은 단순한 소득지지 또는 보전이 아니라 비교적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농업활동과 가계경제에 유용하게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직불제(현금(성) 등)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받는 농업인의 실제 사용실태를 파악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 조사·파악한 지출구조는 향후 지원사업 논의에 의미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지출 내역을 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 해당 산업을 분류하면, 농자재(제조업 상품), 생활용품(도소매·상품중개 서비스), 식재료·식사(음식점·도소매 서비스), 자녀교육(교육 서비스), 문화·여가(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의료·복지(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등임
- 둘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총액(64,280백만원)은 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증가한 지출 활동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산업생산은 841.1억원이 증가, 부가가치는 339.9억원, 고용은 989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 간 중간재 생산 활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파급효과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생산은 392.2억원, 부가가치는 154.6억원, 고용은 24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전라북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생산은 1,233.3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494.5억원, 고용은 1,232명이 증가한 것으로 종합할 수 있음
- 셋째,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내 사용이 전제이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다른 직접지불과 달리 전액 지역 내 소비되므로 지역순환경제 등 기여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여 지역화폐로 지급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은 469.9억원, 부가가치는 153.3억원, 고용은 587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서 생산은 74.4억원, 부가가치는 49.9억원, 고용은 6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훨씬 높은데, 지역화폐 지급효과의 내재화율은 생산 68.2%(현금-44.3%), 부가가치 68.7%(현금-47.7%), 고용은 80.3%(현금-56.4%)로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넷째, 동일한 규모 예산의 SOC(도로·건설), 공공행정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 보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산업의 생산증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도로·건물 등 SOC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공공행정 서비스로 서비스·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SOC 투자는 경제적 효과 내재화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공공행정 서비스는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함
- 만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규모를 SOC와 공공행정에 투자할 경우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과 부가가치 증가액은 물론 고용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제적 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전국적 범위로 파급효과를 확대해 살펴보면, SOC와 공공행정의 생산과 부가가치는 농어민 공익수당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효과의 내재화율이 낮음을 확인하였음

라. 정책효과 분석의 한계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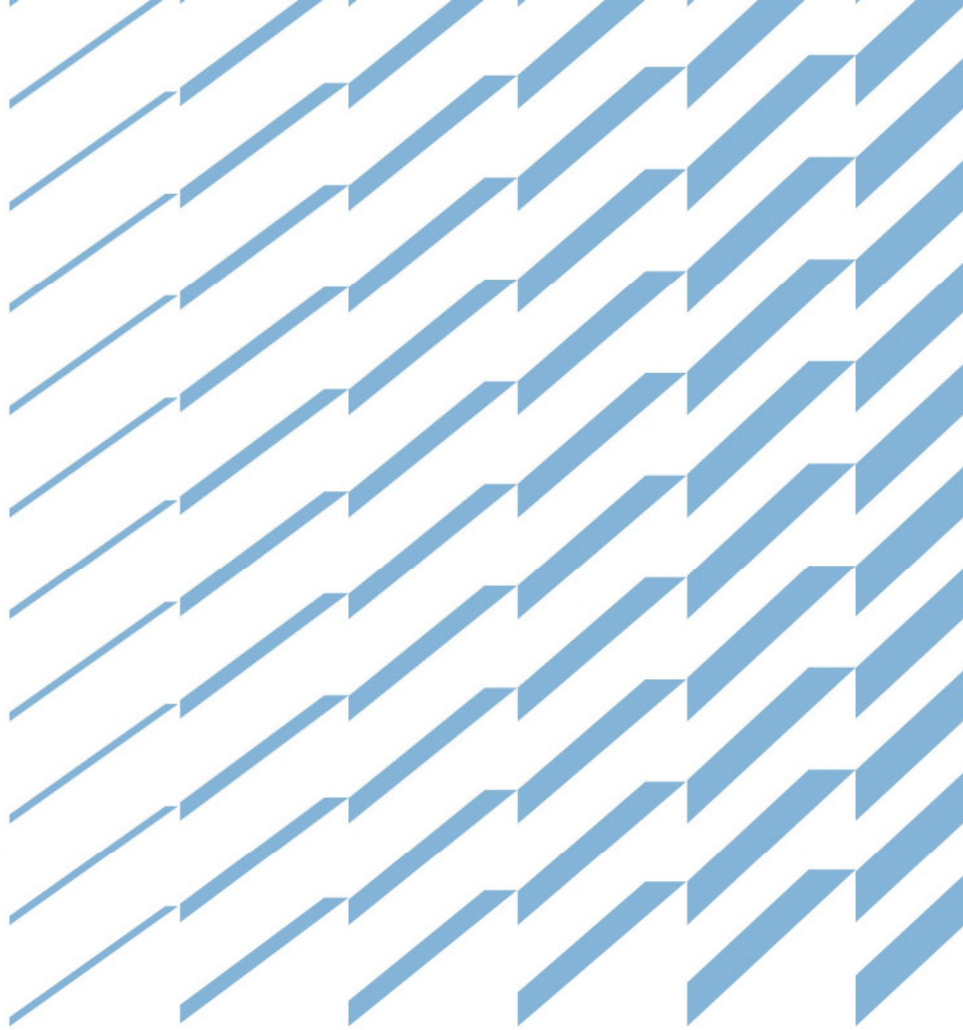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전라북도 모든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이므로, 지원금만큼의 소득이 증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 농어민 공익수당을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소득지지 또는 보전의 효과성을 논의하고 있고,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해 효과를 분석할 수 있지만, 농가경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직접 효과를 바로 증명하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음³⁸⁾
-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예상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량적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득안정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음³⁹⁾

38) 농어민 공익수당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전소득에 지원금액 만큼이 포함되지만, 해마다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 다른 이전소득 정책(국가 및 지자체 직불 등)에 의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를 공익수당의 소득보전 효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조사로 전라북도 표본만 추출할 경우, 표본의 수가 극히 적어지며, 표본 편의(bias)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20년 기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중 전라북도 농가를 추출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농가의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추후 연구과제임



제5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안

1. 연구내용 요약
2. 개선방향 제안



제 5 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언

1. 연구내용 요약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자체 농정시책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약칭,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 제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① 정책의의, ②실행진단, ③정책효과’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특징과 의의’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지역농정의 조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감대 형성, 공익기능 수행자인 농업인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정의 혁신모델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의의를 6가지로 대별하였음
- 첫째, ‘추진과정’으로 보면 지역농정의 역할과 참여농정의 혁신모델로서 의의를 가짐
- 전라북도의 적극적 지역농정은 ‘참여형 추진체계’로 제도화되었고, 공식화된 농정 거버넌스 기구에서 공동으로 신규 시책을 만드는 등 지역농정 혁신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행정협력’의 관점에서 광역-기초 지자체가 상생하는 행정 협력의 전형을 만들
- 도-시·군이 ‘목적, 효과, 공공의 역할’을 합의하여 공동 추진을 협약하였는데, 시·군별 재정여건 차이의 설득·합의로 행정협력의 결과로 만들어 낸 점이 특징임
- 셋째, 국가 농정을 보충·보완하는 적극적 지역농정으로 ‘정책효과 차별화’가 기대됨
- 국가 정책(공익직불제)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요구에 지역농정을 통해 보충하고

-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책 유사성이 있으나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실효적일 것임
- 넷째,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인 자존감을 높여 공식적인 '주체인정'의 의의가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생산·유지 담당자(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주체의 인정과 농업인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다섯째, 농업인의 '소득지지'를 위해 직접 지불(지원)로 농업경영·농가경제를 지원함
 - 농업 경영비와 가계 생계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지급은 소득지지 효과는 물론 지역소비를 늘려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수단이 될 것임
 - 여섯째, 준수사항으로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해 활성화와 활력을 유도함
 - 농촌마을 협약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구체적 실천 활동을 촉진하고 있어 농촌 마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같은 정책수단이 될 것임

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진단'

- 사업의 실행진단과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마련의 근거로 삼고자 전북 농업인 549명 대상으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해수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주요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67.8%가 알고 있어 지원사업의 이해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이유) 농업인 삶의 질 향상(36.8%), 농업인 소득보전(17.2%), 지역경제 활성화(16.4%),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15.1%), 농업·농촌 공익기능 보상(13.8%) 순임
- (이해/만족)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66.30%가 알고 있으며, 목적·조건·대상·지급 수준·방법·확인 등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65.45%가 만족하고 있음
- (준수사항) 필수+선택의 이행조건은 76.18%의 농업인이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고 있으나, 38.14%는 이행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공동체 활동, 논밭 형상유지 등)

- (수당사용)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주로 영농활동과 가계생활에 사용되고 있는데, 농자재 구입(42.4%), 식재료·식사(21.8%), 생활용품 구입(20.9%)의 비중임
- (개선과제) 대상·금액 확대, 부정수급 점검 강화, 재정여건 고려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금 사용처 확대, 지급제외 기준 완화, 이행조건 완화 등 의견이 높음

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 기대효과 분석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책목적으로 예상하는 9개 기대효과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본인의 계획·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기대효과별로 평가한 결과, 비료·농약 감축 의향(75.83%),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74.45%), 농촌마을 활력 기여(73.31%), 농업인 자존감 향상(72.58%), 공익적 기능 유지 기여(72.26%), 생산활동 지속 도움(69.29%), 영농·경영활동 도움(69.22%), 농가 경제·살림살이 도움(68.25%), 영농규모 확대 계획(58.13%) 등의 순임
- 이러한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는 청년과 고령 농업인이, 부부 공동경영 농업인이, 농촌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지원사업의 이해와 만족이 높은 농업인이, 준수사항 이행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음

■ 파급효과 분석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산업생산 841.1억원, 부가가치 339.9억원, 고용 989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화폐 지급효과를 내재화율로 살펴보면 생산 68.2%(현금-44.3%), 부가가치 68.7%(현금-47.7%), 고용은 80.3%(현금-56.4%)로 현금지원보다 지역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

- 같은 규모 예산을 SOC(도로·건설), 공공행정 사업에 투자할 경우로 비교해 보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도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2. 개선방향 제안

- 앞서 살펴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실행진단과 정책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방향과 과제’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함
- ‘개선방향’은 정책효과를 높이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하였음
- ‘개선과제’는 지원사업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수준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음

[표 5-1]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방향과 개선과제 제안 (요약)

구분		주요과제
기본전제	⑥ 농업인-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계약을 통한 의무와 역할을 전제
개선방향	① ‘정책목적’을 강조하고 확대	다양한 기대효과·정책효과 반영
	② ‘정책효과’의 평가·자료작성	정책효과 평가방안 마련, 자료작성
	③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	농업인 교육, 도민 홍보 확대
개선과제	① ‘신청절차와 서류’의 간소화	절차 준수, 최소 서류 간소화
	② ‘이행조건’의 강화·실천 확대	의무이행 강화, 자율실천 확대
	③ ‘지도·점검 강화’ 투명성 확보	부정수급 방지, 의무이행 점검
	④ ‘지원수당 사용처’ 확대 검토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검토(시군)
	⑤ ‘대상과 지원액’의 확대·상향	재정여건 감안 쟁점 협의 논의

가. 기본전제

- 농어민 공익수당은 ‘공익적 기능의 증진과 농가소득의 직접 지원’ 성격을 동시에 갖는

데, 이는 정책지원 대상자인 ‘농업인’의 책무와 정책사업 담당자인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규정하는 성격을 갖는 정책인 것임

- 구체적으로 정책지원의 전제가 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은 ‘농업인’이 이행해 나갈 ‘책무’이며, 이를 유지·촉진하기 위해 ‘지자체’는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임
-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에 대하여 지켜야 할 서로간의 ‘의무와 역할’을 정해 놓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계약’임
- 전라북도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법률적 수준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주체 간(지자체-농업인)의 약속이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하여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임

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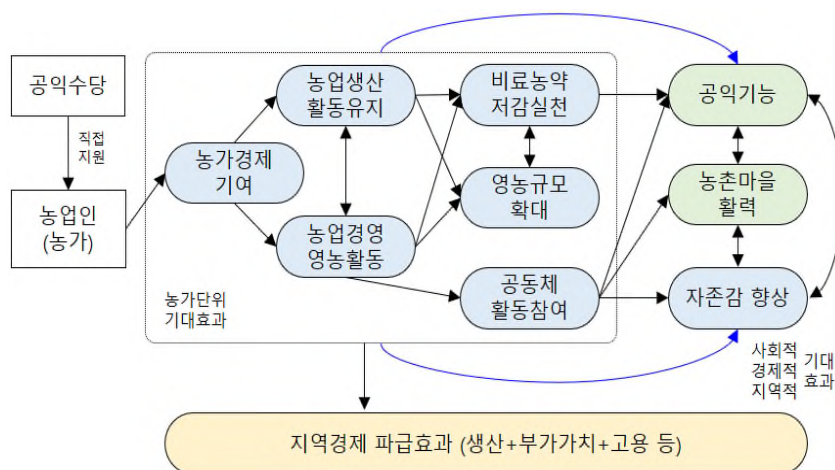
① ‘정책목적’의 강조와 확대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취지와 추진목적을 지원 대상자(농업인)에 초점을 맞춰 사업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효과와 연계하여 강조·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시행 지침의 수정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의 사업시행 지침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로 규정하고 있음
- 수정 반영할 정책목적(안)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확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인의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 고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마을 활력, 농업경영·농가경제 지원 등으로 수정 반영을 추진
- 검토사항

-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지(지원)를 명기할 경우, 타 산업분야 및 계층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간접효과 등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인만 정책목적으로 명시할 경우 도민의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강조할 수 있음

② ‘정책효과’의 지속 평가와 자료작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과 같이,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의 재원마련, 사업을 통한 양적·질적 성과지표 마련이 요구될 시점임 (사업시행 3~4년차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정책효과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미시적 측면은 농가 단위에서 기대되는 정책효과로 ‘농업생산 유지,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저투입 등 친환경, 공동체 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시적 측면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적·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로 ‘공익적 기능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5-1]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효과 간의 관계 모식도

유지·확대, 농촌마을 활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정책효과 영역 또는 지표는 정량적 성격과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정량적 지표는 기존 공식통계(통계청 등)+행정통계(실적 등)를 활용, 정성적 지표는 농업인 대상의 설문조사(주관적 평가 등)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실행과 지속적인 추진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수준(전북도+시·군)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 정책과 결합할 때 우호적 근거를 갖춰갈 필요가 높음

③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 실행진단(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이해정도가 일정 수준이지만, 이해정도에 따라 준수사항과 기대효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결국 정책효과를 높이는 주요한 영향요인임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고⁴⁰⁾, 정부의 공익직불제 정책과 목적, 준수사항 등이 상당한 정도로 중첩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농정 차원의 자체 시책’으로서의 보충성과 차별성을 강조해야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갖는 정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자인 농업인이 다른 정책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에 당분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대상의 ‘교육’과 도민 대상의 ‘홍보’로 구분하여 추진
 - 교육(농업인 대상) : 정책목적, 기대효과, 준수사항, 지원방법, 신청절차 등
 - 홍보(도민 대상)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력,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40) 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제기된 정부 공익직불제와 중복성 쟁점은 타 지자체(강원도) 협의과정에서 해소되었음

다. 개선과제 (농어민 공익수당 실행진단 설문조사 결과 중심으로 제안)

① '신청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 현행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신청 절차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유지하는 바탕에서 농업·농촌 현장에서 제기하는 간소화 내용을 검토함
- 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타 직불제 시스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 처리 효율의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현재 요청되는 간소화는 개별 농업인이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의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농촌마을(이장·통장 주도)에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게 검토할 수 있음
- 이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지원을 받는 농업인의 경우 행정 전산시스템 상에 기록이 있으므로 매년 갱신할 서류를 중심으로 신청서류 간소화를 추진함
- 시행 초기(2020년, 2021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읍·면의 적극 행정을 독려해 나갈 필요가 큼

② '이행조건' 준수강화와 자율 실천 확대

- 사업지원 전제가 되는 '논·밭의 형상유지, 비료·농약 사용 감축'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정체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이행조건임
- 자율조건으로 제시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은 농촌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해 나갈 이행조건임
- 농업·농촌 현장의 농업인 등이 이행조건 준수에 다소 어렵다고 평가할 지라도 이행조건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교육 강화, 마을 노력' 등이 필요함
- 실행진단 조사 결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계기로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이 높게 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농촌마을 단위의 현실 가능한 환경실천 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안하여 실천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음

- 정부의 공익직불제를 지원받으려면 농업인은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이행조건을 수용하는 태도(태세)에 양호한 여건이 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음
- 이행조건인 불이행은 사업지원을 중단할 페널티 조항(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농촌마을 단위의 활성화 실천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여 현장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가칭-농업·농촌 환경실천 대표마을 선정 및 홍보 등)

③ ‘지도와 점검 강화’로 지원의 투명성 확보

-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계기로 농업경영체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의 긍정성과 함께 부정 수급 등과 같이 우려되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농정 차원의 선도적 정책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적정 수급과 의무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실행진단에서도 확인되고 강조된 바와 같이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
- 사업 추진체계에 따른 행정의 상시 점검에 덧붙여 농촌마을 차원에서의 엄격한 평가와 감시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유지해야 함
- 의무이행 조건(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감축)의 지도와 점검은 농촌마을의 ‘경작사실확인위원회’ 등에서 상시 점검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와 안내를 강화함

④ ‘지원수당 사용처’의 확대 검토

-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그 자체로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농가경제의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중요함

- 지역화폐의 특성 상 사용처의 제약이 있는데, 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별로 사용처(가맹점 등)가 상이하여 지역별 농업인의 사용 형태와 편의가 다를 수 있음
-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고, 외부 의존 경제구조에 대응한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시·군별로 지역화폐 발행액과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어 향후 지원된 공익수당의 사용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지역화폐를 수령하는 전달체계가 시·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체계가 기본이므로, 거동 불편 등의 이동 약자가 많은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 마을 단위로의 지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⑤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확대·상향

- 농가 단위 지급 기준을 농업인(여성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연간 60만원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자체 간(전라북도-시·군)의 행정협약을 통한 재원 분담의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시·군의 재정자립 차이로 단체장 간의 이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단체와 시·군의 이견이 상존하는 상황임
-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금액의 상향은 농업·농촌 현장(농업인단체 등)의 의견과 시·군의 정책시행 수용성(예산 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의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할 과제임
- 실행진단 설문조사 결과 대상·금액의 확대 의견과 재정여건 고려 추진 의견이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여러 여건을 고려한 확대·상향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할 것임
-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자 기준(종합소득금액 기준액)은 정부의 직불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제외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어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기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광석. (2019).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 강마야. (2015). 농업 직불금 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월간 『공공정책』.
- 강마야 & 이관률(2015a).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 분석-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사회 25(2). 한국농촌사회학회.
- 강마야 & 이관률. (2015b).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충남리포트 164. 충남연구원.
- 강마야, 이관률 & 허남혁. (2014). 농업직불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 51. 농정연구센터.
- 강마야, 이관률, 허남혁, 김종화, 박경철 & 여민수. (2014).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효과적 재원확보 방안. 충남연구원.
- 김용렬, 송성환, 김창호, 우성휘 & 이청은. (2018).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 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정학균 & 허주녕. (201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농촌계획 20(4). 한국농촌계획학회.
- 김용준 & 강민정. (2020).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과 효과 분석 연구. 경기연구원.
- 김윤종. (2013). 농가 소득 안정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은진. (2018).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 김은진. (2019). 농민수당법안. 농민수당법·어민수당법 발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 김일권 & 변재연. (2019).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김자경. (2021).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재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자료.
- 김태곤, 정호근 & 채광석. (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채광석 & 허주녕(2010). 공익형 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채광석 & 허주녕(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연, 임정빈 & 이정환. (2017).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 GSnJ Institute.
- 김태훈, 김선웅, 김종인 & 박지연. (2017).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유찬희 & 김종인. (2020).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농업전망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유찬희, 김종인, 임영아, 오내원 & 김유나. (2020).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훈,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 박지연. (2018).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대명, 여유진, 김태완 & 원일. (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2020). 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 막셀 마주와이에. (2013). 왜 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 『농정연구』 45. 농정연구센터.
- 박경철. (2016).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열린충남』 75호. 충남연구원.
- 박경철. (2017).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과 방안. 농민기본소득 보장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발표 자료.
- 박경철. (2018a). 농민수당(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시행 방안 토론회 발표 자료.
- 박경철. (2018b). 전국 농민수당 추진 현황 및 과제.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
- 박경철. (2020).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도-배경·현실·대안. 『농업·농촌의 길 2020』. GSJ Institute.
- 박경철 & 강마야. (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경철 & 강마야. (2016).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충남리포트』 228호. 충남연구원.
- 박경철, 한승석 & 강마야. (2019).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준기, 김태곤, 유찬희, 김영준 & 전지연. (2014).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오내원, 유찬희, 김종인 & 박지연. (2016).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박준기, 오내원, 지성태, 이현근 & 정호연. (2015).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이두영, 박지연 & 임준혁. (2019).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형대. (2019). 농민수당 입법화 필요성과 과제. 농민수당 입법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 서재교. (2021).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승수효과 측정과 쟁점.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자료.
- 송원규. (2020). 다양한 농민지원금의 현황과 농민기본소득의 정책입법 가능성.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 자료.
- 양준호. (2021).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자료.
- 유찬희. (202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J 287호. GSJ

Institute.

유찬희 & 김태영(202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 박지연. (2016).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수미. (2018). 농민수당 현황과 쟁점”.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추진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이수미. (2019a).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1)-농민수당의 의미와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녀름 이슈보고서 304.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2019b).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2)-농민수당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녀름 이슈보고서 306.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2019c).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3)-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녀름 이슈보고서 306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2019d).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 녀름 이슈보고서 314.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2020a).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민수당. 녀름 이슈보고서 318.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2020b). 농민수당의 가치. 중앙농정의 가치로. 녀름 이슈보고서 326.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창한. (202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자료.

이창한, 허현중, 서정민, 이지웅, 송원규, 진주 & 최민영. (202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경기농수산진흥원.

이춘선. (2018). 여성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수당.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표 자료.

전성만 & 조기현.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기석. (2017). 농민기본소득의 ‘농부의 나라’로.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발표 자료.

정영이. (2018). 농민수당과 여성농민.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정해일. (2021). 농촌기본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설계 연구 발표.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발표 자료.

정호중. (2018).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의 농가경영안정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남혁, 강마야, 김종화, 이관률 & 여민수. (2013).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Muller. Matthew P. et al.(2005). Can routine laboratory tests discriminate between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nd other causes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40(8).

SUMMARY

Diagno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ublic Value Support Project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y in Jeonbuk

Young-Mo Hwang · Si-Bak Kim · Gyun-Gi Bae · Hojung Jeong · Roun Park

1.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 Research objective

- In terms of its discuss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Public Value Support Project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in Jeonbuk' (the Project) is evaluated as an innovative case of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It significantly supplements the central government's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ject and examine its policy effects in order to provide the base data for a conditional agreement on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s.

■ Research methods

-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policy data to describe the significance and features of the public interest allowance the Project for farmers and fishers,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ject's progress. Additionally, we consulted with Jeonbuk advisory task force to identify improvement areas.
- Based on the proportional allocation of farmer surveys by region, age, and gender, w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to diagnose the Project's implementation

progress, analyze the expected Project's impact, explore relevant influencing factors, and investigat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interindustry methods.

2.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Diagnosis of the Projec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Awareness/Satisfaction): Relatively high levels of Project awareness (66.3%) and satisfaction (65.5%) with the Program's objective and conditions.
- (Compliance): High compliance (76.2%) with the Program's implementation conditions (required + optional).
- (Use of allowances): Primarily utilized for farming and household essentials, such as agricultural materials (42.4%), food (21.8%), and day-to-day necessities (20.9%).
- (Improvement areas): Suggested improvement areas include the following: expanding eligibility and payment amounts, reinforcing the monitoring of benefit fraud, linking the program scope to financial conditions, streamlining application procedures, expanding the number of franchisees, easing ineligibility criteria, and easing implementation conditions.

■ Analysis of anticipated impacts

- Many survey respondents (70.4%) believe that the Program, as part of the Project, is expected to achieve its objectives with positive effects on agricultural management, farming households, community vitality, public interest, self-esteem, and motivation to act.
- Effects by category: Willingness to reduce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pesticides usage (75.8%),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74.5%), contributions to farming community vitality (73.3%), improvement of farmers' self-esteem (72.6%), contributions to making public interest-related functions sustainable (72.3%), contributions to sustainable production activities (69.3%),

contributions to farming management (69.2%), contributions to farming household income (68.3%), and contributions to expanding farming businesses (58.1%).

■ Ripple effects analysis

- Our analysis of the Program's ripple effect (allowances paid to farmers and fishermen in the form of a local business voucher) reveals gains in industrial production (84.11 billion KRW), value added (33.99 KRW), and employment (989 job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al economy.
- The internalization rate derived from local voucher effects is 68.2% (cash 44.3%) for production, 68.7% (cash 47.7%) for value-added, and 80.3% (cash 56.4%) for employment, indicating that voucher payment has a greater regional effect than that of cash payment.
- Even when contrasted to investing an equivalent budget size in SOC, such as construc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je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gram's effect on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the region was greater.

■ Improvement areas

- The Project and Program should be built on the basic premise that they are social contra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farmers, and fishers that outline each party'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ir public interest nature.
- ① Streamlining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quired documents
 - To relieve the burden of submitting required application documents for each farm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excluding documents that can be verified at the community or village level by the community or village head.
- ② Stricter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implementation criteria and expansion of self-regulation practice
 - As implementation conditions are a necessity for achieving policy objectives,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educational sessions and expand self-regulation practices so that farm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implementation conditions regardless of their assessment of the conditions' validity.

③ Securing the transparency of support activities through reinforced monitoring and inspections

-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gram effectively, regular inspections of the Program's processes should be reinforced, and stricter monitoring and more rigorous evaluations should be conducted at the community level, given that applications are made on a community basis.

④ Increasing the number of franchisees to facilitate voucher u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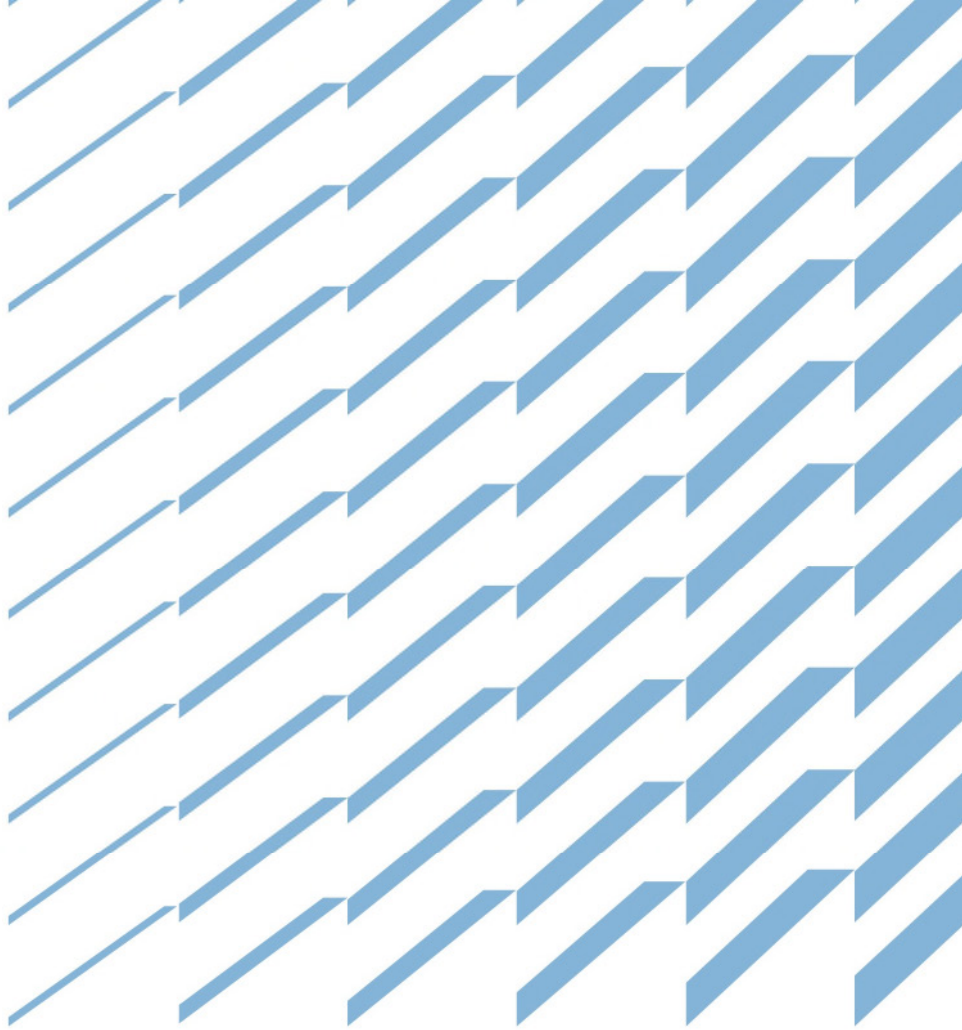
- In order for the Program to make tangible contributions to farmers and their families,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the number of franchisees in cities and counties that accept local business vouchers; for this, the Jeonbuk Provincial Government must provide strong support.

⑤ Expanding eligibility and payment amount

- As many farmers strongly desire an expansion of eligibility and payment amount,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However, given the current financial conditions,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farmers must collaborate to strike a happy medium for practical solutions

Key Words

Public value support project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Direct payment, Policy diagnosis, Performance evaluation, Multifunctional functions of agriculture



부록

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부록 1〉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0-11 조례 제4691호

(시행) 2020-01-01

(개정) 2020-11-13 조례 제4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4.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4조(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내에서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지급 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1. 보조금 지급 신청연도(이하 “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면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 나.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일 것. 다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임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 나.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다. 어업인: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 ②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3.>
1.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부부
 3.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모두 등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13.>
1.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인)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營農)·영어(營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9조(의무이행)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때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제4호나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항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11조(부당수령 방지) 도지사는 제6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부칙 <조례 제4836호, 2020.1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12-31 규칙 제 3117호

(시행) 2021.04.09.

(개정) 2021-04-09 규칙 제31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지급제외 대상)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 및 수산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
- 2의2.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일 세대 중복신청, 신청농지에 대한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미준수,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미준수, 양봉업 유지·관리 미준수,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 등 도지사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3163,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no	지자체 및 조례명		조례번호/제·개정일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4524호 2020.03.06
2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2358호 2017.12.27
3	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조례	제2587호 2020.07.01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02.24
5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제4815호 2020.06.25
6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제2452호 2019.07.15
7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774호 2020.03.23
8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제2323호 2020.03.26
9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718호 2020.01.23
10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319호 2020.01.06
11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86호 2020.01.08
12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2556호 2020.02.28
13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2020.02.19
14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488호 2020.01.13
15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476호 2019.12.27
16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20호 2019.07.04
17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2549호 2019.09.26
18	서산시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12
19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2068호 2019.11.12
20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2.26
21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496호 2020.04.06
22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809호 2019.12.24
23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01.23
24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617호 2019.12.31
25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446호 2019.10.31
26	울산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36호 2020.04.09
27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2357호 2019.10.04
28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2402호 2020.02.05
29	장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37호 2019.10.18
30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951호 2019.10.17
31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691호 2019.10.11
32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418호 2020.03.11
33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19호 2020.06.01
34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2101호 2019.09.18
35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664호 2020.03.10
36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37호 2020.09.29
37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486호 2019.03.15
38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2468호 2019.12.18
39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제2753호 2018.12.28.
40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98호 2019.10.08

자료 : 지자체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최종검색일 2020.10.1.); 유찬희(2021)

〈부록 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자체 농정 시책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약칭, 농어민 공익수당)’의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원 농어업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정책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따로 없습니다. 제시된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 기입하신 개인 사항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조사기관〉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위원 (063-280-7132)

· 조사담당 : 정호중 전문연구원 (063-280-7138)

※ 개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항은 통계적으로만 활용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①남성, ②여성	연령	만 세	영농경력	년	농가소득	총 만원 / (농업소득) 만원, (농외소득) 만원
영농 규모	①논 (평), ②밭 (평) ③축산(축종 : 마리)	경영 형태	①단독경영 ②공동경영	시·군	①전주시, ②군산시, ③익산시, ④정읍시, ⑤남원시, ⑥김제시, ⑦완주군 ⑧진안군, ⑨무주군, ⑩장수군, ⑪임실군, ⑫순창군, ⑬고창군, ⑭부안군		

(논/밭소유/임대 모두 포함, (축종)대표 가축만 기재 (공동경영) 부부 공동경영 [실거주] ①농촌마을, ②읍면 소재지, ③시내(동지역)

1. 선생님은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약칭)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모른다 <-----					중간정도 ----->					매우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 '모두'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주변사람 ② 공무원 ③ 홍보물 ④ 신문·방송 뉴스 ⑤ 농업인단체 ⑥ 인터넷/SNS ⑦ 기타()

3.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에 를 가장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농자재 구입 등 ② 생활용품 구입 등 ③ 식재료·식사 등 ④ 자녀교육 등 ⑤ 문화·여가활동 등 ⑥ 의료·복지 등 ⑦ 기타()

4.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상 ②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③ 농어민의 소득보전
④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⑤ 지역경제의 활성화 ⑥ 기타()

5.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수준'을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알고 있는 수준'		전혀 모른다 <----- 중간정도 -----> 매우 잘 안다											
1	(정책목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농어업인 자금심 고취, 농촌유지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행조건)	(필수)논밭 형상·기능 유지, (필수)비료·농약 적정사용 준수, (자율)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지급대상)	신청년 기준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2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재영농 종사 농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지급수준)	농가당 년 60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지급방법)	년 1회 일괄지급, 지역화폐 10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o	'알고 있는 수준'		전혀 모른다 <----- 중간정도 -----> 매우 잘 안다										
6	(신청방법)	농가→이통장→읍면동(2월~4월), 행정확인(4월~9월), 농가지급(9월), 이행점검(~12월)	0	1	2	3	4	5	6	7	8	9	10
7	(확인과정)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수시)	0	1	2	3	4	5	6	7	8	9	10

6.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별로 '만족하는 정도'를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만족하는 수준'		만족하지 않는다 <----- 중간정도 -----> 만족한다											
1	(정책목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으로 농어업인 자금심 고취, 농촌유지 지원 등	0	1	2	3	4	5	6	7	8	9	10	
2	(이행조건)	(필수)논밭 형상·기능 유지, (필수)비료·농약 적정사용 준수, (자율)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0	1	2	3	4	5	6	7	8	9	10	
3	(지급대상)	산청년 기준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2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재영농 종사 농가	0	1	2	3	4	5	6	7	8	9	10	
4	(지급수준)	농가당 년 60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0	1	2	3	4	5	6	7	8	9	10	
5	(지급방법)	년 1회 일괄지급, 지역화폐 100%	0	1	2	3	4	5	6	7	8	9	10	
6	(신청방법)	농가→이통장→읍면동(2월~4월), 행정확인(4월~9월), 농가지급(9월), 이행점검(~12월)	0	1	2	3	4	5	6	7	8	9	10	
7	(확인과정)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수시)	0	1	2	3	4	5	6	7	8	9	10	

7.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준수사항 이행수준과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준수사항의 '이행과 어려움'	본인이 이행하고 있는 수준										본인이 이행하는데 어려운 정도											
		지켜지지 않는다 <----- 중간정도 -----> 잘 지켜진다										어려웠다 <----- 중간정도 ----->어렵지 않다											
1	논과 밭의 형상(형태)과 기능을 유지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2	비료·농약을 기준에 맞춰 적정 사용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3	마을 단위로 농업·농촌 환경을 보전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8.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 '도움이 된 정도'를 아래의 제시된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표시해 주십시오.

NO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아니다 <----- 중간정도 -----> 매우 그렇다										
1	나의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나의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의 생산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는 비료와 농약 등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는 현재보다 영농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할 것이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표시해 주십시오.

NO	'개선할 사항'	전혀 아니다	중간정도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지원되는 금액의 단가를 더 인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개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의무와 선택의 이행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의무와 선택의 이행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지급 방법을 몇 번에 걸쳐 나눠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no	'개선할 사항'	전혀 아니다	중간정도 <-----> -----> 매우 그렇다									
6	의무이행 조건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지원금액의 사용처(가계, 지출처 등)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농민 아닌 사람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지급제외 기준(농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을 완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시고, 선생님 태의 '지출 변동' 정도를 아래 항목별로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no	사용용도(사용처)	감소	← 변동없음 →			증가	no	사용용도(사용처)	감소	← 변동없음 →			증가
1	농자재 구입 등 (종자비료·농기구·농기계 등)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여가활동 등 (문화·여가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용품 구입 등 (생활용품, 생활자재 등)	①	②	③	④	⑤	6	의료·복지 등 (의약품, 병원 진료비 등)	①	②	③	④	⑤
3	식재료·식사 등 (식재료 구입, 외식, 배달 등)	①	②	③	④	⑤	7	기 타 ()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교육 등 (수강료, 교육물품 등)	①	②	③	④	⑤							

12. '전북 농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과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

.....

.....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연구 2022-13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3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86-5 955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 788966 123889
ISBN 978-89-6612-388-9 (PDF)